

001	형식적의미의 행정과 실질적의미의 행정
<p>① 군 당국의 징발처분, 이발소 영업허가, 조세부과처분, 대법관의 임명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행정), 실질적(행정)</p> <p>② 행정심판의 재결,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, 통고처분[준사법적 행정행위]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행정), 실질적(사법)</p> <p>③ 행정입법[법규명령(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)의 제정, 긴급명령의 제정, 지방의회의 조례제정,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]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행정), 실질적(입법)</p> <p>④ 일반법관의 임명, 토지의 등기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사법), 실질적(행정)</p> <p>⑤ 대법원의 규칙제정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사법), 실질적(입법)</p> <p>⑥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입법), 실질적(행정)</p>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· 국무총리(국무위원)의 임명 <input type="checkbox"/>형식적(행정) <input type="checkbox"/>실질적(통치행위, 행정[×])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 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input type="checkbox"/>[[형식적]][실질적]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 background-color: #e0f0ff;"> <input type="checkbox"/>[[국가기관]][하는 일] </div>	

002	E.Forsthoff의 행정의 개념징표설
<p><input type="checkbox"/>“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, 묘사(기술)할 수 있을 뿐이다.”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의 개념징표로</p> <p>① 행정은 행정주체의 작용이다.</p> <p>② 행정은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형성을 담당한다. <input type="checkbox"/>형성 : 법률관계를 발생·변경·소멸시키는 것</p> <p>③ 행정은 다양한 법형식에 의한다.</p> <p>④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⑤ 행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을 행한다. ← 추상적 사안[×]</p> <p>⑥ 행정은 적극적·미래지향적 형성활동이다. ← cf> 사법 : 소극적</p> <p>⑦ 행정은 포괄적인 지도·감독을 받으면서도 광범위한 활동의 자유를 갖는다.</p>	

003 (001)	전통적 분류 - 폰슈타인의 행정 5분법
<p>※ 행정의 분류 - 목적에 의한 분류</p> <p>1. 전통적 분류 - 폰슈타인의 행정 5분법</p> <p>① 내무행정 → 사회목적적 행정</p> <p>② 외무행정</p> <p>③ 재무행정</p> <p>④ 사법행정</p> <p>⑤ 군사행정</p>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국가목적적 행정 </div> <p>2. 새로운 분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질서행정(경찰행정), 급부행정(물적인 수단의 공급), 유도행정(보조금지급), 계획행정, 공과행정(재무행정), 조달행정(인적·물적 수단의 마련)</p>	

내외 재사군

004 (002,003)	통치행위 “긍정설”의 논거
<p>※ 통치행위 “긍정설”의 논거 ← 기관양태설 [×]</p> <p>① 사법부자제설(프랑스) -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자제하는 것</p> <p>② 권력분립설(사법부내재적한계설)(미국 - 루더 대 보텐사건) ← 다수설·관례</p> <p>③ 독자성설 - 독자적 정치행위</p> <p>④ (자유) 재량행위설(독일·일본) - 집권자의 재량행위</p> <p>⑤ 정책설(제한적 긍정설) -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</p> <p>※ 통치행위 “부정설”의 논거</p> <p>① 법치주의의 성립(법치국가)</p> <p>② 헌법상 일반적인 재판청구권의 인정</p> <p>③ 개괄주의 ← 개괄주의를 취하면 통치행위를 부정 할 수밖에 없다.[×]</p>	

□ **사권 독재정, 대영국**

<p>※ 영국의 통치행위</p> <p>① 대권행위</p> <p>② 영국</p> <p>③ 국사행위</p> <p>※ 각국의 통치행위</p> <p>① 프랑스 : 정부행위</p> <p>② 미국 : 정치행위</p> <p>③ 영국 : 대권행위, 국사행위</p> <p>④ 독일·일본·우리나라 : 통치행위</p>
--

005 (004,005)	행정법의 특색
<p>① 성문성 _____ → 규정 형식상의 특색</p> <p>② 다양성 _____</p> <p>③ 공익목적성 _____</p> <p>④ 평등성(집단성) _____ → 규정 내용상의 특색</p> <p>⑤ 우월성 _____</p> <p>⑥ 단속법규성(단속규범성) _____</p> <p>⑦ 기술성 _____</p> <p>⑧ 특(획)일성 _____ → 규정 성질상의 특색</p> <p>⑨ 강행성 _____</p>	

□ **성다 공평우 단기특강, 형내성**

<p>※ 행정법관계의 특질</p> <p>① 법률적합성</p> <p>② 공정력</p> <p>③ 확정력(=존속력)</p> <p> ㉠ 불가쟁력</p> <p> ㉡ 불가변력</p> <p>④ 강제력</p> <p>⑤ 권리·의무의 특수성</p> <p>⑥ 권리구제의 특수성</p>
--

006 ^[078] (006-1)	단속법규성
<p>※ 단속법규(명령법규) → 위반 → 행정강제·행정벌의 대상 [○]</p> <p>□ 주로 행정법에 적용됨 □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“유효”</p> <p>□ 적법요건(명령적 행정행위 [하명·허가·면제])</p> <p>□ ex> 무허가 포장마차</p> <p>※ 효력법규(능력법규) → 위반 → 행정강제·행정벌의 대상 [×]</p> <p>□ 주로 민법에 적용됨 □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“무효”</p> <p>□ 유효요건(형성적 행정행위 [특허·인가·대리])</p> <p>□ ex> 첩계약</p>	

□ **단명에 효능이有(있다.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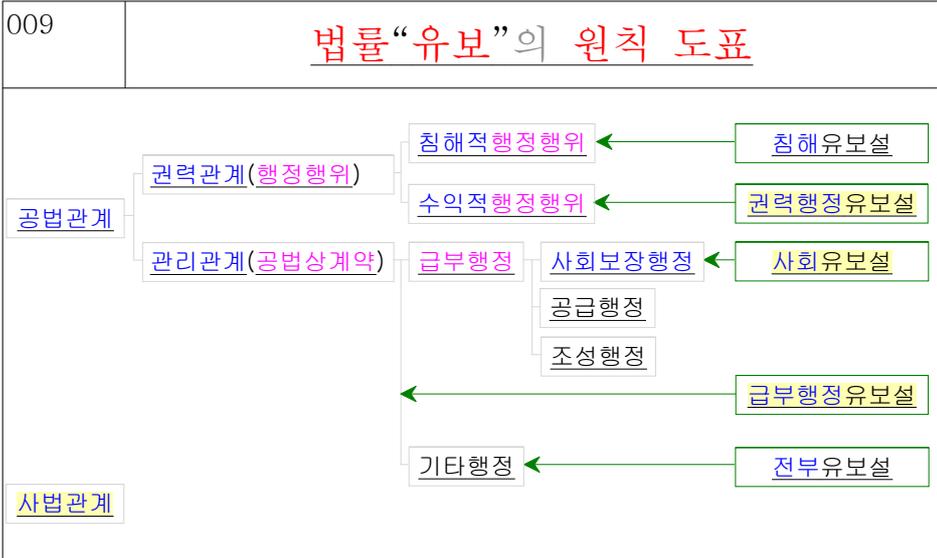
007 (007)	본안심사 : “위법”여부의 조건
<p>① 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 ㉡ 행정청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했는지 여부 <p>②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법률유보의 원칙 - 성문법[O], 불문법[X] ㉡ 법률우위의 원칙 - 성문법[O], 불문법[O], 행정규칙[X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㉢ 성문법 ㉣ 불문법(관습법, 판례법, 조리법 [비평신부]) <p>③ 형식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문서의 형식으로 해야 함</p> <p>④ 절차 - 청문 / 이유부기 / 의견제출 등 ← 행정절차법</p>	

□ **주내형절**

008 (008,009)	법률유보의 원칙 vs 법률우위의 원칙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법률유보의 원칙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법률우위의 원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법률의 의미</td> <td>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단, 개별적·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적법하게 만든 법규명령·조례도 포함됨 성문법[O] + 불문법[관습법][X]</td> <td>성문법[O] + 불문법[O] → 행정규칙[X]</td> </tr> <tr> <td>적용영역</td> <td>일정한 영역(학설대립)</td> <td>모든 영역</td> </tr> <tr> <td>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</td> <td>적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</td> <td>소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</td> </tr> <tr> <td>위반의 효과</td> <td>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(중대명백설) [일반적]무효 or 취소</td> <td>위법 → (중대명백설) 무효 or 취소 단,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취소사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법률 유보 의 원칙	법률 우위 의 원칙	법률의 의미	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단, 개별적·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적법하게 만든 법규명령·조례 도 포함됨 성문법[O] + 불문법[관습법][X]	성문법[O] + 불문법[O] → 행정규칙[X]	적용영역	일정한 영역(학설대립)	모든 영역	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	적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	소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	위반의 효과	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(중대명백설) [일반적]무효 or 취소	위법 → (중대명백설) 무효 or 취소 단, 행정법의 일반원칙 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취소 사유
	법률 유보 의 원칙	법률 우위 의 원칙														
법률의 의미	의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단, 개별적·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적법하게 만든 법규명령·조례 도 포함됨 성문법[O] + 불문법[관습법][X]	성문법[O] + 불문법[O] → 행정규칙[X]														
적용영역	일정한 영역(학설대립)	모든 영역														
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	적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	소극적 법률적합성의 원칙														
위반의 효과	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(중대명백설) [일반적]무효 or 취소	위법 → (중대명백설) 무효 or 취소 단, 행정법의 일반원칙 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→ 위법 → 취소 사유														

□ **유적지, 소우**

- ※ **성문법**
 - ① 헌법
 - ② 법률
 - ③ 명령
 - ④ 조례
 - ⑤ 규칙
- ※ **불문법**
 - ① 관습법
 - ② 판례법
 - ③ 조리법 - **비평신부**



013 (015)	비례의 원칙의 내용
<p>□ 단계적 구조</p> <p>① 적합성의 원칙 -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.</p> <p>② 필요성의 원칙(= 최소침해의 원칙) → 대체수단의 제공이론</p> <p>③ 상당성의 원칙(= 협의의 비례원칙) - 이익형량설</p> <p>□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 → 위법 → 행정심판[○], 행정소송[○]</p> <p>□ 다소 균형을 잃은 경우 → 부당 → 행정심판[○], 행정소송[×]</p> <p>※ 적용범위 > 초기(경찰영역) → 현대(모든 영역[침해영역 + 급부영역])</p> <p>※ 효과 > 행정법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은? 위법 → 무효·취소[다수설·판례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□ 부당[×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하자 있는 법[법률]령[법규명령]의 효력은? 위법 → 무효[취소를 모른다.]</p>	

□ **적필상**

□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 **행정권 발동은 비례원칙(필요성의 원칙)에 반한다.**

014	비례의 원칙에 반한다. → 위법
<p>①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약 25m를 음주운전한 경우의 운전면허취소처분</p> <p>②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처분</p> <p><주의> 사실상 영업을 양도·양수 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.</p> <p>③ 근무시간에 10분간 외출하여 다방에서 친구를 면담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</p> <p>④ 변호사 개업지 제한</p> <p>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만성신부전증과 과음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 된 것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</p> <p>⑥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고시일로부터 8일후 청소년에게 대여한 도서대여업자에 대한 7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</p> <p>⑦ 심재론 사건에서의 면직처분</p> <p>⑧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(수용시설 밖에서)</p> <p>↔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,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·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.</p>	

※ 단 1회 케이스

□ **비례의 원칙에 반한다.**

① 단 1회의 **요정출입** → **파면처분**

② 단 1회의 **부정휘발유 판매** → **영업취소처분**

③ 단 1회의 **미성년자에게 술 판매** → **영업취소처분**

015	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“않는다.”
<p>①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처분(판례의 원칙적인 태도)</p> <p>② 15년간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</p> <p>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과락제도</p> <p>□ 비례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[×]</p>	

016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등의 원칙에 반한다. → 위법</p>
<p>① 당직근무 대기 중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1명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(3명은 견책)</p> <p>② 국·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국·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</p> <p>③ 공무원시험에서의 군가산점제도(위헌)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%의 가산점 부여</p> <p>④ 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</p> <p>⑤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</p> <p>⑥ 소주판매업자에 대한 구입명령제도</p> <p>⑦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</p>	
<p>⑧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규정</p> <p>⑨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사법시행규칙</p>	

017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“않는다.”</p>
<p>①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행한 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 □ 신뢰보호의 원칙, 형평의 원칙, 재량권의 남용에 위반[×]</p> <p>②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과락제도 □ 비례의 원칙,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[×]</p>	

018 (016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정“징계”사유 □모두 처분성[O]</p>
<p>□ 판례> 4명의 공무원이 고스톱(3명[견책], 1명[파면]) → 평등의 원칙 위반</p> <p>① 견(견)책 :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이 정지됨</p> <p>② 감봉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/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</p> <p>③ 정직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1/3만 지급받는 것[2/3을 감하는 처분]으로 1년6개월간 승급이 정지됨</p> <p>④ 해임 :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공회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/8 내지는 1/4 지급이 제한됨</p> <p>⑤ 파(파)면 :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의 1/4 내지는 1/2 지급이 제한됨</p> <p>□ 견책·감봉은 경징계, 정직·해임·파면은 중징계,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다.</p>	

□ **견 감정 해피**

019	공적인 견해표명을 “부정”한 사례
<p>① <u>선행조치가 무효인 행위</u></p> <p>② <u>일반론적인 견해표명</u></p> <p>③ <u>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</u></p> <p>④ <u>도시계획 변경결정</u> [정구장 → 청소년수련원]</p> <p>⑤ <u>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</u> → <u>공적인 견해표명</u> [×]</p> <p>□ <u>토지형질변경신청</u> [농지→대지]에 대한 거부</p> <p>⑥ <u>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</u> → <u>공적인 견해표명</u> [×]</p> <p>□ <u>국도이용계획변경신청</u> [농림지역→준도시지역]에 대한 거부</p> <p>⑦ <u>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</u> → <u>공적인 견해표명</u> [×], 확인을 하지 않은 <u>귀책사유</u> [O]</p> <p>(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·시행할 예정)</p> <p>⑧ <u>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</u></p> <p>→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를 한 것</p> <p>⑨ <u>도시계획변경</u> [자연녹지지역의 지정결정 → 보전녹지지역의 지정결정]</p> <p>⑩ <u>문화관광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</u></p> <p>⑪ <u>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”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</u></p> <p>⑫ <u>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</u> <u>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</u></p> <p>⑬ <u>병무청의 징병검사연기 및 국외여행허가의 취소</u> [일본국 영주권취득자 →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자]</p> <p>※ <u>공적인 견해표명을 “인정”한 사례</u></p> <p>□ <u>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</u> → <u>공적인 견해표명</u> [O]</p> <p>□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 때문에 <u>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</u>에 대한 거부</p>	

020	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
<p>① <u>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</u> <u>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</u> <u>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</u> <u>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보전녹지부장관이 “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”를 하면서</u> <u>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</u> → <u>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</u></p> <p>③ <u>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농지로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건립을 목적으로 하는</u> <u>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하여</u> <u>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</u> <u>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.</u></p> <p>④ <u>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</u> <u>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,</u> <u>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</u> <u>위반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</u></p>	

- ※ 요약
- 여수경찰서사건
 - 공적인 견해표명(선행조치) 인정 [O]
 -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 [O]
 - 홍천군 종합병원
 - 공적인 견해표명(선행조치) 인정 [O]
 -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 [O]
 - 대순진리회사건
 - 공적인 견해표명(선행조치) 인정 [O]
 -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 [O]
 - 건축주와 건축사
 - 보호가치 있는 신뢰 [×] → 귀책사유 [O]
 -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 [×]

021	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. → 위법
<p>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<u>삼청교육</u>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</p> <p>② <u>보세운송면허세</u> →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봄</p> <p>③ 국세청장이 <u>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사업경영상당업</u>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<u>회신</u></p> <p>④ <u>변리사 제1차 시험</u>을 절대평가에서 <u>상대평가</u>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조항을 <u>즉시 시행</u>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<u>무효</u>이다.</p>	

022	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“않는다.”
<p>① <u>1년 10개월</u>이 지난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: <u>예상</u>[O]</p> <p>② 허위의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출한 <u>하사관</u>을 임용일로부터 <u>33년</u>이 경과한 후 임용을 취소한 것</p> <p>③ 행정서사업무허가를 한 <u>20년</u>이 다되어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그 취소사유를 <u>행정청이 모르는 상태</u>에 있다가 취소처분이 있기 직전에 알았다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취소는 적법하다.</p> <p>④ <u>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</u>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하고,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나, 후에 환경·풍치·미관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위법한 거부처분이 아니다.</p> <p>⑤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는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<u>부진정 소급효</u>에 관한 것으로서</p> <p>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.</p> <p>⑥ <u>단순히 착오</u>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</p> <p>⑦ 과거 <u>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</u>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<u>10년</u>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숨긴 채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처분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. ← 취소가능성도 <u>예상</u>[O]</p> <p>⑧ 일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해오다가 <u>그 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</u>는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를 <u>취소한 처분</u></p>	

023	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
<p>① <u>위법한</u> 수익적 행정행위의 <u>직권취소</u>의 제한</p> <p>② <u>적법한</u> 수익적 행정행위의 <u>철회</u>의 제한</p> <p>③ <u>행정법상의 확약</u></p> <p>④ <u>행정법상의 실권</u>(취소권의 상실) - <u>3년</u></p> <p>⑤ 소급효 - <u>진정소급효인 경우</u> : <u>원칙</u>> <u>소급효금지</u> - <u>부진정소급효인 경우</u> : <u>예외</u>> <u>소급효금지</u></p> <p>⑥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- <u>원칙</u>> <u>허용</u>[×] → <u>예외</u>>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 (← <u>다수설, 판례</u>)</p> <p>⑦ <u>계획보장·공공시설보장</u> : <u>계획존속청구권</u>[×] 그러나 <u>보상보호</u>[O]</p> <p>⑧ <u>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</u> : <u>존속보호</u>[×](← 불법영역이므로), 그러나 <u>보상보호</u>[O]</p> <p>⑨ 공법상계약, 급부행정, 행정지도, 사실상 공무원이론</p>	

<p>※ <u>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</u></p> <p>① <u>위법한</u> 수익적 행정행위의 <u>취소</u>의 <u>제한</u></p> <p>② <u>적법한</u> 수익적 행정행위의 <u>철회</u>의 <u>제한</u></p> <p>③ <u>행정법상의 확약</u></p> <p>④ <u>행정계약</u></p> <p>⑤ <u>실권의 법리</u></p> <p>⑥ <u>소급효</u> ① <u>진정소급효</u> - <u>원칙</u>> <u>소급효금지</u> ② <u>부진정소급효</u> - <u>예외</u>> <u>소급효금지</u></p> <p>⑦ <u>사실상 공무원이론</u></p> <p>⑧ <u>공법상계약</u></p>
--

024 **부당결부금지의 원칙 - 복수운전면허**

① ㉠·㉡·㉢을 가지고 있는 A가 트레일러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
 ㉠ 1종 특수 → 취소[○]
 ㉡ 1종 대형 → 취소[×]
 ㉢ 1종 보통 → 취소[×]

② ㉠·㉡·㉢을 가지고 있는 A가 250cc인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대형 → 취소[×]
 ㉡ 1종 보통 → 취소[×]
 ㉢ 2종 소형 → 취소[○]

③ ㉠·㉡을 가지고 있는 A가 시내버스(대형승합자동차)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대형 → 취소[○]
 ㉡ 1종 보통 → 취소[○]

④ ㉠·㉡·㉢을 가지고 있는 A가 승용차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대형 → 취소[○]
 ㉡ 1종 보통 → 취소[○] (18세 이상)
 ㉢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→ 취소[○]

⑤ ㉠·㉡을 가지고 있는 A가 택시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특수 → 취소[○]
 ㉡ 1종 보통 → 취소[○]

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**입주민**이 이용하는
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**기부채납의무**를
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
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**반한다.**[×]

⑥ ㉠·㉡·㉢을 가지고 있는 A가 12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특수 → 취소[×]
 ㉡ 1종 대형 → 취소[○]
 ㉢ 1종 보통 → 취소[○]

㉠·㉡·㉢을 가지고 있는 A가 9인승 승합차를 가지고 음주운전
 ㉠ 1종 특수 → 취소[○]
 ㉡ 1종 대형 → 취소[○]
 ㉢ 1종 보통 → 취소[○]

- 1종 특수면허 : 레커, 트레일러, 2종 보통면허
- 1종 보통면허 : 승용차, 승합차15↓
- 2종 보통면허 : 승용차, 승합차10↓

025 **공포·공고절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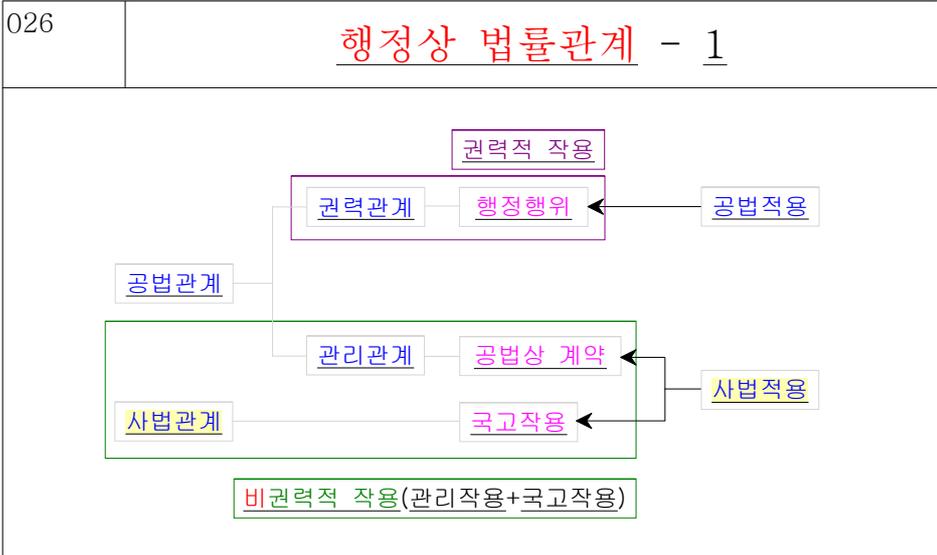
① **관보**에 게재
 □헌법개정, 법률, 조약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의 공포
 □헌법개정안, 예산,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

② **서울특별시**에서 발행되는 **일간신문 2이상**에 게재
 □**국회의장**이 법률을 공포하고자 할 때

③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**공보**에 게재
 □조례, 규칙의 공포

④ **공보**나 **일간신문**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
 □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고자 할 때

※ 행정법[법령·조례·규칙]의 효력 발생 시기
 □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**공포(공포일)**한 날로부터 **20일**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.
 □[부담적 효과] 국민의 권리제한, 의무의 부과 → **30일** 후





※ 행정사법관계

- 의의>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사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**공법적 규율**을 받게 하자!
- 공법적 규율> 행정법의 일반원칙, 헌법상 기본권, 사법원리의 수정
- 주창자> **볼프(독일)**, 지배르트
- 적용영역> **급부행정**, 경제유도행정
- 효력> 공정력[×], 확정력[×], 집행력[×]
- 구제> 사법의 형식 → 민사소송[○](통설·판례), 당사자소송[×]

028 (017,018,019)

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“기준”

□ **추신 이선생** **성복권** **신귀특**하다!

- ① 추(주)체설
- ② 신주체설(= 귀속설, 특별법설) : 독일의 다수설, 볼프
- ③ 이익설
- ④ 선(성)질설(= 복종설, 권력설)
- ⑤ 생활관계설

- ① 주체설 :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이면 공법관계
- ② 신주체설 :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행정주체에게 권리/의무가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공법관계
- ③ 이익설 : 법률관계의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는지? 사익을 추구하는지?
- ④ 성질설 : 법률관계의 성질이 지배복종관계인지? 대등한 관계인지?

⑤ 생활관계설 : 사람의 생활관계를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인지?
사인으로서의 생활관계인지?

□우리나라의 다수설 > **복수기준설**

□ **추신 이선생**,
성복권,
신귀특

- ## 공법관계
- 029-2
- ① 임의적 공용부담 ← (공법상계약 → 관리관계 → 공법관계)
 - ② 행정주체의 보조금 교부 ← (공법상계약 → 관리관계 → 공법관계)
 - ③ 운전면허처분
 - ④ 서울 대학생 제적 등의 관계
 - ⑤ 국가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감독관계
 - ⑥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
 - ⑦ 귀속재산처리관계
 - ⑧ 전화이용관계 중 전화요금 강제징수관계
 - ⑨ 채권입찰관계
 - ⑩ 특허기업자의 토지수용관계

029-1	공법관계
①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 (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)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·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 ⑤ 폐광산의 업무상 재해위로금 ⑥ 수도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 ⑦ 하천법상 손실보상금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[에 대한 징계처분] ⑨ 국립유치원전임강사의 해임처분 ⑩ 연금수혜대상자의 지위확인소송 ⑪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신분 또는 지위확인소송 ⑫ 공법상 계약	

※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
 (=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)의 취소
 공법관계설(= 행정처분설)
 : 다수설, 판례[특히(재량행위)로 봄]
 사법관계설(= 사법상 계약설)
 ·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
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
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
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
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.[×]

030	사법관계
① 전화가입계약 → 전화가입계약해지 ② 잡종재산인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납입고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유재산(행정재산[공용재산, 공공용 재산, 기업용 재산], 보존재산, 잡종재산[국유림]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유재산의 매각[사법관계 : 국고관계], 잡종재산의 매각[사법관계 : 국고관계] ③ 창덕궁 비원 안내원들의 채용계약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⑤ 환매권의 법적성질 - 판례> 사권, 통설> 공권 ⑥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 - 판례> 사권 - 민사소송, 통설> 공권 - 당사자소송 ⑦ 토지수용의 협의취득 ⑧ 농공단지 내 토지매각의 경우 분양대상기업체의 선정행위 ⑨ 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한미군 종토세공조	

- ⑩ 국가의 물품매매계약
- ⑪ 공사도급계약
- ⑫ 국유재산(잡종재산)의 관리·불하
- ⑬ 사유지매각
- ⑭ 국유광업권처분
- ⑮ 철도운행사업
- 국채·지방채의 발행
- 수표의 발행
-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관계
- 전기·전화·가스의 공급관계
- 시영버스사업자와 그 이용자의 관계
- 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
- 지하철 승차·이용관계

031 (020)	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내부관계
사법관계 → 처분성[×]	공법관계 → 처분성[○]
① 주한미군 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 ② 종합유선방송위원회직원의 근무관계 ③ 한국토지신탁 ④ 세(서)울지하철공사의 징계처분 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직원의 근무관계 ⑥ 한국조폐공사	① 농지개발조합의 징계처분 : 항고소송 ② 도시재개발조합 ㉠ 조합원 지위확인소송 : 당사자소송 ㉡ 관리처분계획(분양) : 항고소송

주한미군 종토세공조

< 공공단체(법인) >
 지방자치단체
 공법상 사단법인(공공조합)
 공법상 재단법인(공재단)
 영조물법인

032 (021)	특별권력관계의 도표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공법관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권력관계(행정행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무원관계 <small>(공무원의 국가·공공단체 근무관계)</small> 수형자(재소자)관계 <small>(수형자의 교도소 수형관계)</small> 국·공립학교학생의 재학관계 군인관계 <small>(군인의 군복무관계)</small> 관리관계(공법상계약)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사법관계 </div>	

□ **공수국군**

033 (022)	특별권력관계의 종류
<p>□ 특별권력관계 → 권력관계 → 공법관계</p> <p>① 공법상 근무관계 - 공무원·군인이 국가·지자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근무관계를 맺는 것</p> <p>②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- 국립대학학생의 재학관계, 국립도서관의 이용관계 - 국립병원 이용관계, 재소자의 수형관계 □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관계(특별권력관계 → 공법관계) □ 일반환자의 이용관계(사법관계)</p> <p>③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- 국가·지방자치단체 -[위임·감독]-> 공공단체·공무수탁사인</p> <p>④ 공법상 사단법인 - 조합의 내부관계(조합과 조합원), ex> 농지개량조합</p> <p>※ 권력관계의 효력> 공정력[○], 확정력[○], 집행력[○] 등이 발생한다. ※ 권력관계의 구제> 행정소송[항고소송, 당사자소송]</p>	

□ **근영특사**

- **군복무관계** : 특별권력관계
- **군입대관계** : 일반권력관계

034	특별권력관계
<p>□ 독일의 O.Mayer에 의해 정립된 개념</p> <p>□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 : 불침투성의 이론</p> <p>□ 성립 : 법률의 규정, 상대방의 동의[임의적 동의, 강제적 동의] □ 임의적 동의 : 공무원관계의 설정, 국·공립학교의 입학, 국·공립도서관의 이용 □ 강제적 동의 :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</p> <p>□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특징</p> <p>① 특별권력주체가 구성원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 할 때 법적근거필요[×] ②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③ 사법심사의 배제</p> <p>□ 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(부정설(□), 제한적 긍정설,(다수설), 올레의 수정설) □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·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 내지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분해·귀속시키려는 견해이다.</p> <p>□ 특별권력주체는 구성원에게 형벌은 부과 할 수 없다. ← 징계권[○], 명령권[○]</p>	

035 **올레의 수정설(유력설)**

상대방의 권리/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
 특별권력관계를 발생/ 변경/ 소멸시키는 관계

· 군대 : 훈련
 · 국·공립학교 : 시험평가
 · 공무원 : 업무수행

외부관계 → 기본관계 : 사법심사[O], 법치주의[O]

내부관계 → 경영수행관계
 사법심사[x], 법치주의[x]

· 군대 : 입대/ 제대
 · 교도소 : 입소/ 출소, 형의 집행
 · 국·공립학교 : 입학/ 졸업/ 퇴학/ 제적/ 정학/ 전과
 · 공무원 : 임용/ 퇴직/ 전직/ 파면/ 징계 <i>ci> 형벌[x]

※ 경영수행관계
 일반공무원관계, 개방적영조물이용관계 - 사법심사[x], 법치주의[x]

①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
 ② 학생에 대한 통상적인 수업행위, ③ 국·공립도서관 이용관계
 ④ 국·공립학교 재학관계, ⑤ 국·공립병원 재원관계

군복무관계(방위근무관계), 폐쇄적영조물이용관계 - 사법심사[O], 법치주의[O]

① 군에 대한 훈련·관리
 ②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등 격리병사 재원관계
 ③ 수형자에 대한 행형 등 교도소 재소관계

판례> 구청장에 의한 동장면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. (특별권력관계[O])
 판례> 국립대 신입생에 대한 불합격처분, 국립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→ 처분성[O]
 판례> 재소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이송조치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.
 판례> 농지개발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한 징계처분
 특별권력관계[공법관계] → 처분성[O] → 항고소송[O]

036 (023) **공무수탁사인** = “행정주체” + “행정청”의 지위

행정주체 : 법인격[O], 권리·의무의 귀속주체, 민사·당사자소송의 피고
 행정청 : 항고소송의 피고

① 변(별)정 우체국장
 ② 사선의 선장, 항공기의 기장
 ③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시행자
 ④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
 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

학설		판례
종래의 다수설	최근의 유력설	
공무수탁사인[O] → 행정주체[O]	공무수탁사인[x] → 행정주체[x] → 행정보조인[O]	공무수탁사인[x] → 행정주체[x] → 행정보조인[O](= 공의무부담사인)

변사토 학원

037 **행정법관계의 특질**

행정법의 특색	행정법관계의 특질
① 성문성	① 법률적합성
② 다양성	② 공정력
③ 공익목적성	③ 확정력(=존속력) : 불가쟁력, 불가변력
④ 평등성(집단성)	④ 강제력
⑤ 우월성	⑤ 권리·의무의 특수성 → 권리·의무의 포기·이전의 제한·금지
⑥ 단속법규성(단속규범성)	→ 선거권 : 선거권의 포기[x] <input type="checkbox"/> 선거권의 기권 - 포기[x], 불행사[O]
⑦ 기술성	⑥ 권리구제의 특수성 → 공법관계[행정소송], 사법관계[민사소송]
⑧ 특(획)일성	
⑨ 강행성	

성다 공평우 단기특강

041 (026)	포기가 제한되는 공권 (포기 할 수 없다.)
① 고소권 ② 소권 ③ 영(연)금권 ④ 선거권 - 이전성의 제한, 포기성의 제한 ⑤ 봉급권(공무원의 봉급청구권) - 퇴직 후에는 포기 [O] cf> 봉급의 의미 - ㉠ 직무에 대한 반대급부 ㉡ 생활안정 → 공명정대한 공무수행이 가능함	※ 선거권의 기권 <input type="checkbox"/> 포기 [×] <input type="checkbox"/> 불행사 [O] <input type="checkbox"/> 불행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제한 할 수 없다.
※ 포기성의 인정 - 경제적 가치의 내용, 공익에 현저한 영향이 없을 때 <input type="checkbox"/> 손실보상청구권,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물사용권, 공무원의 여비청구권,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	

□ **고소영 선봉**

042 (027)	공권의 확대화 경향
① 실체법상의 측면 ㉠ 2요소론의 대두 ㉡ 헌법상 기본권의 공권화 경향 ㉢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경향 ㉣ 특수한(적극적) 공권의 인정 ㉤ 강행법규의 의미변화 ㉥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	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(광의) 행정개입 청구권 -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(협의) 행정개입 청구권
② 절차법상의 측면 - 행정절차 참가권	

□ **2기반 특강 0 참가**

043	공권의 확대화 경향
① 2요소론의 대두 - 불러의 3요소론(강행법규성, 사익보호성, 청구가능성) ② 헌법상 기본권의 공권화 경향 -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자유권적 기본권 의 인정 ③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경향 -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연탄공장건축허가판례 ④ 특수한(적극적) 공권의 인정 □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- 판례>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 □ 재량행위 : 적극적 공권, 형식적 공권(=절차적 공권) → 특정처분을 요구 [×] □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-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: to 자신 -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(경찰영역, 환경영역) : to 제3자 □ 기속행위 : 적극적 공권, 실체적 공권 → 특정처분을 요구 [O] ⑤ 강행법규의 의미변화 (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) □ 기속법규(기속행위) + 재량법규(재량행위[일탈·남용 없는 재량]) ⑥ 재량의 0으로의 수축이론 (←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) - 판례> 독일의 띠뚱판결 □ 재량행위 -[생명·신체 의 직접적 위협]-> 기속행위	※ 행정소송법 §27 (재량처분의 취소)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. ※ 판례> 독일의 띠뚱판결 <input type="checkbox"/>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[O]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량의 0으로의 수축 [O]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개입청구권 [O]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 [O]

044-1
[252] **원고적격을 “인정”한 판례**

- ① 인근주민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
- ②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처분의 취소
- ③ 공설화장장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
- ④ 인근주민의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집단지설지구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
- ⑤ 부지사전승인처분사건
- 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(내)의 주민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
- ⑦ 기존업자의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의 취소
- ⑧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의 취소
- ⑨ 이전지역에 있는 기존 약종상업자의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 ← (허가)
- ⑩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
- ⑪ 기존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
- ⑫ 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.
- ⑬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으로 기존주유소업자가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. (다수설 - 허가)

<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>

- 환경법상 환경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
 - 인근주민의 연탄공장설치허가취소청구
 -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취소청구
 - 공설화장장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주민들의 이익
-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인 경우
 - 법률상 이익[O]
-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인 경우
 - 법률상 이익[X]
- 쓰레기 소각장결정고시취소소송에서 폐기물처리법상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.

원고적격을 “인정”한 판례 044-2

- ① 인근주민의 연탄공장설치허가취소청구 (← 복효적 행정행위의 효시)
- ②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취소청구
-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
- ④ 공설화장장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
- ⑤ 기존주유소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은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 (↔ 기존목욕탕업자[반사적 이익])
- ⑥ 고성군수의 약종상영업장소 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이전지역의 기존업자가 다투는 경우
- ⑦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기존업자의 이익
- ⑧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광구를 설정하도록 한 구 광업법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광구설정처분의 취소를 인접광업권자가 다투는 경우
- ⑨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취소청구
- ⑩ 기존업자의 선박운항사업면허취소청구
- ⑪ 공적부조로 받는 이익 (ex>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·의료급여대상자의 지정으로 받는 이익)

045-1
[253] **원고적격을 “부정”한 판례**

- ① 건물준공처분에 대해 인접건물 소유자들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
- ②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.
- ③ 일반국민 또는 인근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은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.
- ④ 약사에게 한약제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.
- ⑤ 신규 공중목욕장 허가영업으로 기존 목욕장업자의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.
- ⑥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반사적 이익이다.
- ⑦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⑧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
- ⑨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 임명함으로써 동 대학 세무학과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

<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>

-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.
- 문화재의 지정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
-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인의 주주가 갖는 이익

원고적격을 “부정”한 판례 045-2

- ① 영업허가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
 - ㉠ 기존목적당업자가 거리제한으로 얻은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 (↔ 기존주요소업자[공권의 침해])
 - ㉡ 무역거래대상 수입제한이나 금지조치로 국내 생산업체가 받는 이익
- ②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통제를 가하는 결과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
 - (ex> 의료법상의 의사의 진료행위거부금지임무, 약사법상의 약사의 조제행위거부금지임무)
- ③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
 - (ex> 공무원이 상관의 훈령 또는 직무명령을 잘 준수하여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)
- ⑤ 제3자(지역주민)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
- ⑥ 국립대학교수가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
- ⑦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이해관계
- ⑧ 문화재의 지정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
- ⑨ 귀속재산불허처분취소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
- ⑩ 하천부지 정용권자의 폐천부지매각에 관한 연고권

046 (028) **단계적 행정결정 = 다단계 행정결정** □사부 예일

□판례>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적정·부적정 통보 : 처분성 [O]

□판례> 부지사전승인처분사건 : 처분성 [O]

과학기술부장관
① 흡수원
부지사전 승인처분
부지사전 승인신청
한국전력 원자력발전소
제3자(인근주민)
소송 중
완전허가
부지사전 승인처분 취소소송

- ① 부지사전승인처분(①)의 처분성 인정여부?
□ 처분성 [O]
□ 판례의 성격규명> 사전적 부분건설 허가처분
- ② 제3자(인근주민)의 원고적격 인정여부?
□ 원고적격 [O]
- ③ 제3자(인근주민)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?
□ ① -[흡수]-> ② : 소의 이익 [X] → 각하
- ④ 부지사전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면?
□ 완전허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를 수 있다.

※ **단계적 행정결정 = 다단계 행정결정**

□ 독일의 이론

□ 대규모 공사(장기간, 막대한 자본) - ex> 공항, 원자력발전소, 폐기물 처리업, KTX

□ 사전결정 → 부분허가 → 완전허가

다예비결정 다일분허가(결정)

ex> 부지선정 → 각각의 건물에 대해 허가 → 최종적 허가(확인)

047 **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**

□ **대법원 판결내용**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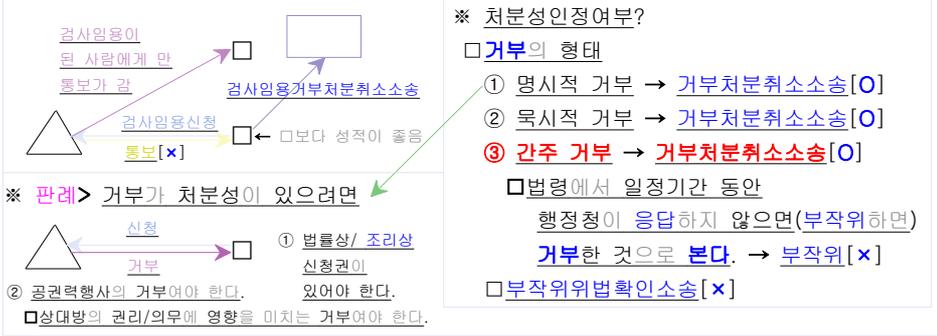
① **검사의 임용여부**는 행정청의 자유**재량행위**이다.

② 이 재량행위는 무한한 재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따라서 행정청은 재량의 일탈·남용이 없는 **응답**을 해 줄 **의무**가 있다.

③ 상대방은 재량의 일탈·남용이 없는 재량행사를 **요구할 권리**가 있다.
□ **응답청구권 [O]** ← **다수설**> **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**
□ **목적적 거부**에 대해 **법률상/ 조리상** 신청권이 있는 경우

④ **소송요건을 통과시켜라!** (원고적격의 인정)
→ 본안에서 재량의 일탈·남용을 심사해라! → (대법원) **파기환송**

□ **목적적 거부** → **거부 [O]** → **거부처분취소소송 [O]**, **부작위위법확인소송 [X]**
□ **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**



048 **공법상 법률사실의 분류**



049 (029) **기간계산 - “초일”을 “산입”하는 경우**

□ 공법상 사건 - 자연적 사실 - 시간의 경과 - 기간

□ **강호 0국민 연구군**

- **원칙** : 초일불산입의 원칙
- **예외** :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
 - ① **강(공)소시효기간**
 - ② **호적신고기간**(ex> 출생신고, 사망신고) → **인감증명의 유효기간계산**
 - ③ **0** :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
 - ④ **국회의 회기계산**
 - ⑤ **민원사무처리기간**
 - ⑥ **연령계산**
 - ⑦ **구속기간, 형기계산**
 - ⑧ **군복무일수**

053 (032)	사인의 공법행위 ↔ 행정행위 ↔ 사법행위(물품매매계약, 공사도급계약)
① 투표행위 ② 신고(출생, 결혼, 사망) ③ 조합설립행위(공법상 합동행위)	자기완결적 공법행위 = 자족적 공법행위
④ 신청 (✓ 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) ⑤ 동의, 승낙, 협의(토지수용의 협의) ⑥ 기(지)원 입대(= 입대지원, 자원입대) ⑦ 입학원서의 제출(국가시험의 응시행위) ⑧ (행정)소송·심판의 제기	행위요건적 공법행위 =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□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함

□ 투신조 청동기입소

054	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·사법행위
행정행위 ↔ 사인의 공법행위 ↔ 사법행위	
공통점 >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	공통점 > 비권력행위
차이점 > ① 행정행위 : 공정력[O], 확정력[O], 집행력[O] 등의 효력이 발생함.	차이점 > ① 사인의 공법행위 :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함
② 사인의 공법행위 : 공정력[X], 확정력[X], 집행력[X]	② 사법행위(물품매매계약, 공사도급계약) : 사인들 간의 사적자치를 목적으로 함 (당사자 간의 이해조절)
※ 사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(주로 행정객체) -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(투표행위[국민투표, 선거행위]) ※ 행위의 효과에 따른 분류(자기완결적 공법행위, 행위요건적 공법행위)	

055 ^[138]	신고 - 구별실익 > 처분성 여부
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(전형적 신고)	수리를 요하는 신고(변형적 신고)
= 자기완결적 신고 = 자족적 신고 □ 행정절차법상의 신고 □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없다. □ 수리·거부 → 처분성[X]	= 행위요건적 신고 □ 완화된 허가제 □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다. □ 수리·거부 → 처분성[O]
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장 이용료변경신고 ③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	① 건축법상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상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 ② 수산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④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

056 **적법한 신고와 부적법한 신고의 도달과 수리**

수리를 전제[×] → 적법한 신고를 전제[○]		수리를 <u>요하지 않는 신고</u>	수리를 <u>요하는 신고</u> (수리를 전제[○])		
적법한 신고	도달	효력발생[○]	효력발생[×] 단, 수리의무발생[○]		
	수리	수리는 의미가 없음	효력발생[○]		
부적법한 신고	도달	효력발생[×]	효력발생[×]		
	수리	효력발생[×]	하자 있는 수리행위 → 위법		
		부적법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 행위 → 무신고행위 → 행정벌 등 행정제재[○]	<table border="1"> <tr> <th>무효</th> <th>취소사유</th> </tr> <tr> <td>효력발생[×]</td> <td>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효력발생[○]</td> </tr> </table>	무효	취소사유
무효	취소사유				
효력발생[×]	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효력발생[○]				

057 **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**

-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될 통칙적 규정(일반법)은 없다. 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[×]
- ②-㉠ 의사무능력자(유아·만취자)의 행위 : 민법[무효] → 행정법[무효]
- ㉡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: 민법[취소] → 행정법의 재산법영역[취소]
- ③ 대리 : 성질상 **일신전속적**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 될 수 없다.(사직원의 제출, 투표, 귀화허가)
- ④ 행위의 형식 : 사인의 공법행위는 **반드시** 요식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⑤ 효력발생시기 : 원칙> 도달주의 + 예외> 발신주의
- ⑥ 의사표시
 - ㉠ 합동행위(조합설립행위) - 성질상 집단성·형식성이 중시되므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될 수 없다.
 - ㉡ 비진의 의사표시 → 행정법에 적용[×]
 - ㉢ 여군하사관면역처분사건 : 여군의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 → 적용[×]
 - ㉣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 : 행정청의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 → 적용[×]
- ⑦ 부관 : 원칙>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.
- ⑧ 철회·보정 - 원칙> 가능[○]
 - 예외> 가능[×] ← 수험행위, 투표행위, 소장의 수정

-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도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절대무효로 본다.
- ②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공법법규에 특별규정을 두어 민법상의 무능력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.
- ③ 개인적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.
- ④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발생시기는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.
- ⑤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전에도 공익상의 관점에서 그 철회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.[×]

※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

- 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서 주로 문제됨
- ② 하자있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
 - 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 → 영향[×]
 - ㉡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
 - 하자있는 사인의 공법행위가
 - ㉢ 무효, 부존재, 적법하게 철회 → 행정행위도 무효!
 - ㉣ 취소 → 행정행위도 취소사유
 -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!

058 **물품매매계약 · 공사도급계약**

- 사법관계 = 사법행위 = 사법상계약
- ① 다음 중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? 사법관계
 - ②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닌 것은? 사법행위
 - ③ 다음 중 공법상계약이 아닌 것은? 사법상계약

059	<h2 style="color: red;">고시의 종류</h2>
<p><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행위적 고시 > □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</p> <p>< 법규적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적 고시 > = 법령보충규칙</p> <p>① <u>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(현재결정)</u> ② <u>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(판례)</u> ③ <u>행정규제기본법의 고시(학설)</u> ④ <u>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고시(학설)</u> ⑤ <u>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(학설의 평석)</u></p> <p><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 일반처분적 고시 > (→)</p> <p>① <u>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</u> ② <u>약제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</u> ③ <u>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</u></p>	

<p><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></p> <p>① <u>두말분교폐지조례</u> ② <u>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</u> ③ <u>약제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</u> ④ <u>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</u></p> <p>□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처분성을 인정한다.[O]</p>

060	<h2 style="color: red;">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</h2>
<p>=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= 법규명령형식의 (제재적) 처분기준</p> <p>· 다수설 - 법규명령설(형식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< 법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으로 규정 >></p> <p>· 판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령(시행규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칙> 행정규칙 → 소의 이익[O] 예외> 법규명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통령령(시행령) → 법규명령 → 소의 이익[O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□청소년보호법 시행령 - 800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 	

061 (033)	<h2 style="color: red;">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= 법령보충규칙</h2>
<p>□판례·다수설>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[O]</p> <p>①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②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노인복지사업지침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(04년 현재결정) ⑥ 보건사회부장관(현, 보건복지부장관)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⑦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 ⑧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 ⑩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⑪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(식)품제조업허가기준</p>	

□ **제주 노인 도시 청소년 의료보험 공개액 택시**

062	국회법 제98조의 2 【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】
<p>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[위임명령] [집행명령] 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훈령·예규·고시 등이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[법규명령] [행정규칙]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← 제출[법규명령[O] + 행정규칙[O]] 다만,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(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.)</p> <p>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[법규명령]안 당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. ← 검토·통보[법규명령[O] + 행정규칙[×]]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.</p>	

※ 행정입법의 통제

□ 의회에 의한 통제 → **직접적** 통제

- 영국 : 의회제출절차
- 독일 : 동의권 유보
- 옛날 미국 : 입법거부제도

□ “83년 차아다 사건” → **위헌판결**

- 우리나라 : **동의권 유보[×]**
 - 국회법 §98의 ②
 - 헌법 §76의 긴급명령, 긴급재정경제명령

※ 우리나라에 직접적 통제방법이 있는가?

① 법규명령 : 견해대립[O] □ → “국회법, 헌법”이 직접적 통제방법인가?

② 행정규칙 : **직접적 통제방법[×]** □ 행정규칙은 직접적 통제방법이 없다.

063 (034)	행정입법의 통제 - 행정부 자체적인 통제
<p>① 절차적 통제 - 행정부 내부적으로 행정입법을 만들고 나서 절차적 심사를 거치는 것 대통령령 : 법제처의 심사 → 국무회의의 심의,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총리령·부령 : 법제처의 심사, 관계국무위원의 부서(사인)</p> <p>② 감독권에 의한 통제 -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[행정입법]에 대한 감독권</p> <p>③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- 법제처 (→)</p> <p>④ 행정심판법 §42의 2에 의한 통제 → 일반행정심판위원회[×] □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·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훈령·예규·고시·조례·규칙)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·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.</p>	

□ **절감특행**

※ 우리나라 법제처의 성격을 지닌 기구

- 미국 : OMB(관리예산처/ 예산관리처)
- 프랑스 : 국감사원
- 일본 : 내각법제국

※ 행정입법의 통제

□ 의회에 의한 통제 → **간접적** 통제

- ① 국정조사권·국정감사권
- ② 대통령 → 탄핵소추권
- ③ 국무총리 → 질문권
- ④ 국무총리·국무위원 → 해임건의권

064	헌법 제107조 【법률 등 위헌제청·심사권·행정심판】
<p>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[구체적 규범통제]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[위헌법률심사권]</p> <p>②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[위헌위법명령·규칙심사권]</p> <p>※ 명령[법규명령]·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✓ 대법원만[×]</p> <p>① 주체 : 원칙> 각급법원(지방법원·고등법원·대법원[최종적인 심사권]) 예외> 헌법재판소 (다수설[긍정]·헌법재판소[긍정]) ① 법무사법 시행규칙(대법원 규칙) ②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부령) - 당구장사건</p> <p>② 대상 : 명령[법규명령]·규칙[법적성질이 법규명령인 것] 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 : 법규명령 □ 행정규칙 - 원칙> 명령·규칙심사권의 대상[×] - 예외> 명령·규칙심사권의 대상[O] ←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 □ ① 재량준칙 + 평등의 원칙·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→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[O] ② 법령보충규칙 - 제주 노인 도시 청소년 의료보험 공개액 택시</p>	

③ **효력**

①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**실효(장래효)**된다.
→ **일반적효력설**

② 명령·규칙이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행사해서 위헌·위법판결을 받으면 “**당해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거부된다.**”
→ **개별적효력설(적용거부설)**
↓ < 보완 >
※ **행정소송법 §6** ↓ **법제처장[×]**
□ **대법원** -[**통보**]-> **행정안전부장관**
→ 행정안전부장관은 **관보에 게재**

③ 명령·규칙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**실효(장래효)**된다.
→ **일반적효력설**

065	행정입법부작위
<p>□ 행정입법의 통제 → 사법부에 의한 통제 →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</p> <p>□ 항고소송(행정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)[×] → 헌법소원제기[○]</p> <p>□ 국가배상청구[○], ex> <u>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</u></p> <p>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입법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[○]</p> <p>② 우리나라 현행법상 행정권의 시행명령제정의무를 정하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다.[○]</p> <p>③ 시행명령(집행명령)의 제정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권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.[×] ← 없다</p> <p>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부작위의 법리를 인정하였다.[○]</p> <p>⑤ 우리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.[○]</p>	

066	실정법상 [강학상·학문상] 행정행위
<p>① 행정청이 행하는 ↔ 행정청이 아닌 자의 행위 : 행정행위[×] □ 행정청[×] → 행정처분[×]</p> <p>□ 사립학교법인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.[×]</p> <p>□ 사립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 할 때에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</p> <p>□ 사인의 공법행위(신고·신청) → 행정청[×] → 행정행위[×]</p> <p>② 개별적·구체적 사실에 관한 ↔ 일반적·추상적 규율 : 행정행위[×]</p> <p>□ 행정입법(총리령의 제정) → 행정행위[×]</p> <p>③ 법집행으로서</p> <p>□ 외부적행위 ↔ 내부적행위(예외) > (통설·판례) 공무원의 징계처분 → 행정행위[○] → 처분성[○]</p> <p>□ 법적행위 ↔ 사실행위 - 권력적 사실행위 : 행정행위[×], 처분성[○]</p> <p>- 비권력적 사실행위(행정지도) → 행정행위[×] → 처분성[×]</p> <p>④ 권력적·단독적 ↔ 비권력적 작용(공법상계약, 행정지도) : 행정행위[×]</p> <p>공법행위 ↔ 사법행위(잡종재산의 매각) : 행정행위[×]</p>	



① 행정청이 행하는

② 개별적·구체적 사실에 관한

③ 법집행으로서

④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+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

□ 일원설(실체법상 개념설), 이원설(쟁송법상 개념설 [다수설])

067	행정행위의 기능
<p>① 실체법적 기능</p> <p>② 절차법적 기능</p> <p>③ 집행법적 기능 - 행정행위는 행정대집행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행정집행의 근거가 된다.</p> <p>④ 소송법상 기능</p>	

068 (035) **물적 행정행위 → 일반처분 → 행정행위**

- ① **문화재 지정행위**
- ② **교통표지판(의 명령)** - **횡단보도, 이정표, 신호등, 가변차로**
- ③ **주차금지구역의 지정**
- ④ **공용개시행위**
- ⑤ **개별공시지가의 결정**
- ⑥ **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**

□ **문교주 공개용**

069 **복효적 행정행위 =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- 1**

□ **소송요건**>

- ③ **원고적격** :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(→)
- ④ **제소기간**
 - ㉠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: **적용[×]**
 -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**적절 상대방**에게는 **사전통지규정**이 있다.
 - 행정절차법은 제3자에 대한 **사전통지규정**이 없다.
 -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에게도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[×]
 - ㉡ 처분 등이 **있는 날**로부터 1년[행정심판-180일] : **적용[O]** ← **불변기간[×]**
 - 단 **정당한 사유**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행정심판 관련 **판례** > **복효적 행정행위**에 있어서 180일(행정심판)이 지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정당한 사유**에 포함된다.

- ① 의의
 - ㉠ **흔효적** 행정행위(흔합효적 행정행위)
 - ㉡ **제3자효** 행정행위(**일반적** 복효적 행정행위)
- ② 유형 - **원고적격**
 - ㉠ **주인소송(인인소송·환경소송·이웃소송)**
 - 처분의 **근거법률** 또는 **관련법률**에서 사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
 - ㉡ **경업자소송**
 - **특허** 받은 **기존업자**
 - ㉢ **경원자소송**
 - 일반적으로 **배타적 관계**에 있는 자

070 **복효적 행정행위 =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- 2**

□ **본안심사**> **원칙**> 집행부정지, **예외**> **집행정지**(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인정됨)

즉시항고 ← **항고소송[×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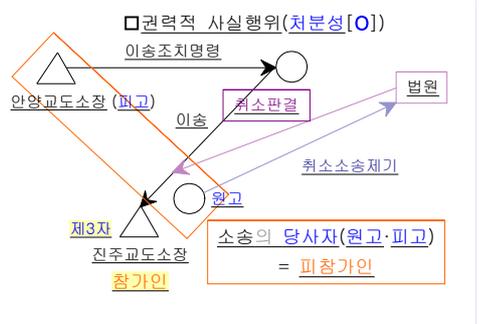
즉시항고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- ① 과태료부과결정
- ② **집행정지결정**
- ③ 간접강제제도
- ④ 소의 변경

판결		결정/명령	
법원이 주요사안에 대해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서 판결서의 형식으로 하는 것		법원·법관이 부수적 사안에 대해서 임의적 변론을 거쳐서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	
3 상고		3 재항고	
2 항소	상소	2 항고	
1 항소		1 항고	

cf> 항고소송 : 판결에 대해서 불복

- **판결**>
- 행정소송법 §29(제3자효·대세적 효력)
- “**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.**”
□ **원고·피고**에게만[×], **당사자**에게만[×]
- ① **소송참가**
 - 행정소송법 §16
 - **제3자**[연탄공장건축주]의 **소송참가**
 - 법적성질 > **공동소송적** 보조참가인
 - 행정소송법 §17
 - **행정청**[진주교도소장]의 **소송참가**
 - 법적성질 > 보조참가인
 - ② **재심청구**(행정소송법 §31)
 - 자신의 **책임없는 사유**로 ← **책임있는**[×]
 - 소송참가를 못하여 공격·방어를 못 했을 때
 - 중극적인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[O]



074 (040)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발생하는 경우

① **비대체적 결정**
 ② **전문적 결정**
 ③ **형성결정** - 지방자치법
 ④ **예측결정** - 출입국관리법
 ⑤ **외(위)원회의 구속적 가치결정** - 문화·예술

ex> 국가시험의 2차 답안지 채점(고시) 면접, 근무성적평정

□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발생하면 위법은 있을 수 없다. [×]

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	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현저한 위해를 가할 자에게 출국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.
--	---

□ 비전형 예외

※ **판단여지설**
 □ 법률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으면
 원칙> 법 개념으로 보아
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
 사법심사의 대상 [O]
 예외> 일정한 경우(←)에
 행정청의 판단여지로 보아
 사법심사가 배제 또는 제한 될 수 있다.

□ 판단여지의 한계 → **위법**
 ① 행정청이 명백히 법을 위반
 ② 사실을 오인
 ③ 객관적 기준을 위반

075 **판단여지설**

① 엄격한 의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학설이 **아니다**.
 ② 판례는 **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**.
 ③ 최근 독일의 경향 : 판단여지는 **축소**하는 경향

바호프	울레
→ 판단여지설 < 법적용과정 > ① 사실관계 : 확인 ↓ ③ 포섭(판단여지 발생) ② 법률요건 : 해석	→ 대체가능성설 → 불확정개념을 □ 법원이 판단 -[대체]-> 행정청이 판단 ·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있을 경우 → 경험적 개념 - 새벽·주간·야간 → 가치개념(=규범적 개념) ← 판단여지 발생 □ 적합성·필요성·적정성·공익·공공복리

076 **기속행위와 재량행위**

① 판단여지는 모든 행정작용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.
 ②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재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.
 ③ 불확정개념도 법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불확정개념에 대한 최종해석권은 법원이 가진다.
 ④ 불확정개념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·적용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.
 ⑤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여지를 갖는다고 한다.
 ⑥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있는 경우 요건재량설에서는 재량이 허용된다고 본다.
 ⑦ 판단여지설에서는 불확정개념을 법개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법해석의 문제로 본다.
 ⑧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한계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있다.
 ⑨ 행정법령의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.
 ⑩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, 기속행위에는 어떤 경우에도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.
 ⑪ 재량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.
 ⑫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.
 ⑬ 재량이 영(零)으로 축소되면 의무로 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.

⑭ A법 제11조는 “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내용은?
 ㉠ 관할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·영업취소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판단여지의 문제이다.
 ㉡ 관할행정청이 8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
 ㉢ A법 제11조 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은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의 취소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선택재량만을 인정하고 있다.
 ㉣ 관할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.

- ① [×] 비전형 예외
- ② [O] 판단여지설(원칙>법개념, 예외>판단여지)
- ③ [O] 원칙> 법원의 전속적 권한
- ④ [O] 원칙> 사법심사의 대상
- ⑤ [O] 비전형 예외
- ⑥ [O] 재량> 중공목적·공백규정·불확정개념
- ⑦ [O] 원칙>
- ⑧ [O] 비전형 예외
- ⑨ [×] 원칙> 법개념(법원의 전속적 권한)
- ⑩ [×] 명문의 규정, 요건보충적부관
- ⑪ [O] 남용(목사행복) → 위법
- ⑫ [×] 일탈·남용이 있으면 사법심사를 받는다.
- ⑬ [×] 공권 = 강행법규성 + 사익보호성
- ㉠ [×] 재량의 문제(효과), 판단여지(요건)
- ㉡ [×] 일탈, ㉢ [×] 결정재량도 있음
- ㉣ [O] 일탈은 아니지만 남용이 될 수 있음



□ 하허면

특인대

확공통수

078^[006] (006-2) 행정행위를 위반한 행위의 효과

※ **단속법규**(명령법규, 적법요건) → 위반 → 행정강제·행정벌의 대상 [O]
□ 주로 행정법에 적용됨 □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유효
□ 적법요건 : 명령적 행정행위(하명·허가·면제)
□ ex> 무허가 포장마차

※ **효력법규**(능력법규, 유효요건) → 위반 → 행정강제·행정벌의 대상 [X]
□ 주로 민법에 적용됨 □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무효
□ 유효요건 : 형성적 행정행위(특허·인가·대리)
□ ex> 첩계약

□ 단명에

효능이 有

079 예외적 승인[억제적·절대적 금지의 해제]
허가[예방적·일반적·상대적 금지의 해제]

※ **예외적 승인(재량행위)** (↓) ↔ **허가(기속행위)** (→)
□ 특허[재량행위] vs 허가[~금지의 해제] : 견해대립 있음
□ 다음 중 기속행위가 아닌 것은?, 다음 중 재량행위인 것은?

- ① 토지수용법상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
- ②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서의 유흥음식점허가
- ③ 개발제한구역[보존지구] 내에서의 건축허가
- ④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건물의 증·개축 또는 형질변경허가
- ⑤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의 단란주점영업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
- ⑥ 마약법상 마약취급면허(의사들의 마약류 취급)
- ⑦ 카지노업허가
- ⑧ 산림(토지)형질변경허가

※ 허가 [명령적 행위]

- ① 건축허가 [대물적 허가]
- ② 영업허가(음식점영업허가) [대물적 허가]
- ③ 연초소매업허가, 양곡가공업허가
- ④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⑤ 수·출입허가
- ⑥ 통금해제(통행금지의 해제, 입산금지의 해제)
- ⑦ 보도관제해제
- ⑧ 운전면허 [대인적 허가]
- ⑨ 의사면허·한의사면허 [대인적 허가]
- ⑩ 총포·도검·화약류제조업허가 [혼합적 허가]
- ⑪ 택시미터검사 ⑫ 차량검사합격처분
- ⑬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
- ⑭ 주류제조면허 [허가] → 법률상 이익 □
- ⑮ 주유소 거리제한 규정으로 기존업자가 받은 이익

086	공증의 처분성 관련 판례
<p>※ 학설 - 긍정설(다수설) : 공증은 처분성이 있다. - 부정설</p> <p>※ 판례 - 원칙> 처분성[×] - ① 행정의 편의, ② 사실증명의 자료 - 예외> 처분성[○] ① 지적법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반려(거부)행위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</p>	

<p>※ 공증의 처분성</p> <p>· 판례></p> <p>- 원칙> 처분성[×]</p> <p>- 예외> 처분성[○](법률관계의 변동[○])</p> <p>① 의료유사업자자격증 갱신발급행위 ②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 등록설정행위 ③ 구 “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사회단체등록행위 ④ 토지분할신청거부행위 ⑤ 지목등록변경신청반려행위(임야→대지)</p> <p>㉠ 종래> 대법원 - 처분성[×] 헌법재판소 - 처분성[○]</p> <p>㉡ 현재> 대법원 - 처분성[○]</p>
--

<p>※ 통지의 처분성</p> <p>□ 의사의 통지 : 대집행의 계고·통지, 조세채납처분자에 대한 독촉 □ 관념의 통지 : 귀화고시(귀화허가의 고시), 특허출원의 공고</p> <p>□ 판례 - 원칙> 처분성[○] -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- 예외> 처분성[×] ① 정년퇴직통고 ② 공무원의 당연퇴직통보(당연퇴직의 인사발령)</p>	
---	--

087 (045,046)	부관의 종류 - 법정부관[×]
<p>· 부담 - 처분성[○] · 기타부관 - 처분성[×]</p> <p>① 조건 -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㉠ 정지조건 : 처음에 행정행위의 효력[×] →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 ㉡ 해제조건 : 처음에 행정행위의 효력[○] →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</p> <p>② 기한 -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</p> <p>③ 철회권의 유보 ④ 수정부담 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⑥ 부담유보</p>	

□ **조기 철수법 유보, 정발 해소**

088 부관의 종류의 뜻

- ① **부담** - 작/ 불/ 수/ 급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(하명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)
- ② **조건** - **정발 해소** ← cf>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하면 부담으로 해석!
- ③ **기한** - 시기/ 중기[적정하게 붙이는 경우-**존속기간**, 부당히 짧게 붙이는 경우-**갱신기간**]
- ④ **철회권의 유보**
 - ㉠ 의의 :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(철회) 할 수 있다.
 - ㉡ 기능 : 의무이행 확보기능,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배제
 - ㉢ 한계 :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언제나 자유롭게 철회 할 수 있다.[×]
□ 철회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철회의 일반원칙[이익형량]은 지켜져야 한다.
- ⑤ **수정부담**
 - ㉠ 법적성질 : **수정허가**[다수설], **부관**[×] ← cf> **수정인가**[×]
 - ㉡ 수정된 내용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: **수정된 행정행위의 취소소송**[×] □
 - ㉢ 일반부담 - (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) ~된다. 그러나~ **거부처분 취소소송**[O]
 - 수정부담 - (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) ~안된다. 그러나~ **부작위위법확인소송**[O]

※ **부관이 아닌 것**

- ① **법정부관**[×]
- ② **기간**[×]
- ③ **법률효과의 전부배제**[×]
- ④ **해제권의 유보**[×]

· 법정부관에도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된다.[×]
· 기와지붕을 갖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콘크리트지붕을 가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의 부관은? **수정부담**

- ⑥ **법률효과의 일부배제**
 - ㉠ 예 : 택시의 격일제 운행, 버스노선의 지정행위, 야간에만 사용토록 한 도로점용허가
 - ㉡ 법적성질 : **부관**[다수설, 판례], **행정행위의 내용상 제한**[×]
 - ㉢ 법적근거 : 반드시 필요함
- ⑦ **부담유보** -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적·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후에 부담을 설정·변경·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는 부관

089 (047) 법정부관의 예 - 부관[×]

-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
즉,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·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
- ① **인감증명의 유효기간**
 - ② **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**
 - ③ **광업권의 존속기간**
 - ④ **광업허가의 효과발생이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**
 - ⑤ **공무원의 조건부임용**
 - ⑥ **수렵면허법정기간**
 - ⑦ **2종 보통 운전면허**

□ **인자 광광 공수2**

090 (048) 부관의 내용상 한계

- ① **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**(비평신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.)
- ② **법령상의 한계**(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.)
- ③ **이행가능성의 한계**(부관은 이행가능해야 한다.)
- ④ **목적상의 한계**(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된다.)

□ **행법이목**

091 (049)	부관의 한계		
부관	명문의 규정 [O]	명문의 규정 [X]	
		전통적 통설 판례	최근의 다수설
기속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	[O]	[X] 판례 > 가사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“무효”	효과제한적 부관 [X] 요건보충적 부관 [O]
재량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	[O]	[O]	[O]

□ 기속행위에도 법률요건보충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. [O]
 □ 판례에 의하면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,
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. [X] ← **재량행위** [X]

□ **기준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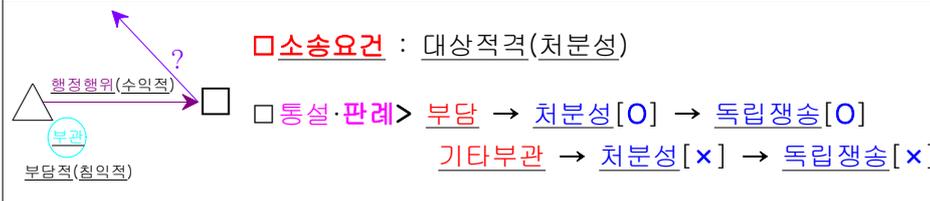
092 (050)	사후부관 [부관의 사후변경]의 가능성		
명문의 규정 [O]	명문의 규정 [X]		
	부정설	긍정설	
사후부관 [O] 부관의 사후변경 [O]	사후부관 [X] 부관의 사후변경 [X] ↑ 부관의 부종성 □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부관을 붙여야 한다.	· 부담만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· 제한적 긍정설 (다수설, 판례) 원칙 > 사후부관 [X] 예외 > 사후부관 [O] ① 법률에서 규정을 한 경우 ② 사후부관의 유보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판례 > ① 법률에서 규정을 한 경우 ② 사후부관의 유보가 있는 경우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+ ④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	

□ **법사상사**

093	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		
□ 통설·판례			
부관의 하자	행정행위에		
무효	원칙 > 영향 [X] → 부관만 무효		
	예외 > (하자있는 부관이 행정행위에) 중요한 요소(본질적 내용) → 영향 [O] → 부관 + 행정행위 → “전부” 무효		
취소	전	유효 → 유효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	
	후	무효	원칙 > 영향 [X] → 부관만 무효 예외 > (하자있는 부관이 행정행위에) 중요한 요소(본질적 내용) → 영향 [O] → 부관 + 행정행위 → “전부” 무효

- ① 부관이 독립적으로 취소되면 부관이 무효인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. [O]
- ② 부관이 무효이면 본체인 행정행위도 무효임이 원칙이다. [X]
- ③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. [X]
□ 강제집행·철회사유의 대상
-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. [X]
□ 이행하지 않아도 바로 발생한다.

094 **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**
[부관의 독립 "쟁송" 가능성]



※ **쟁송의 형태**

① **통설**

㉠ **부담** : 부관 부담을 대상으로 부관 부담을 취소해 주세요! □ **진정일부취소소송**

㉡ **기타부관** : 행정행위(수익적) 을 대상으로 부관 부담만 취소해 주세요!
 □ **부진정일부취소소송**

② **판례**

㉠ **부담** : **진정일부취소소송 [O]**

㉡ **기타부관** : 행정행위(수익적) 을 대상으로 부관 부담만 취소해 주세요!
 □ **전부취소소송 [O]**
 □ **부진정일부취소소송 [X]**

095 **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**
[부관의 독립 "취소" 가능성]

□ **본안심사**

※ **판례**

① **부담** : 부관 부담을 대상으로 부관 부담만 취소! □ **독립취소가능성 긍정**

② **기타부관** : 행정행위(수익적) 을 대상으로

행정행위가

㉠ **기속행위** → (부관은 무효) → **무효선언!**

㉡ **재량행위** → (하지있는 부관이 재량행위에)
 중요한 요소 [O] → **전부취소판결**
 중요한 요소 [X] → (본안) **기각판결**

096 **구속력과 공정력의 의의**

※ **구속력** - 실체적 효력 ↓ 상대방만 구속 [X]
 □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

※ **공정력(예선적효력)** - 절차적 효력

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더라도

② 무효가 아닌 한
 □ 무효·부존재에는 **공정력 [X]**

③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
 □ ① 처분청, ② 재결청, ③ 수소법원(행정법원) ← cf> 형사·민사법원 [X]

④ 상대방·다른 행정청·법원 [형사법원·민사법원]에 대해서

⑤ 그 **유효성**이 일응 추정·통용되는 힘

※ **공정력의 본질**

□ **적법성 추정설**
 □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
 → 적법 → 유효
 (유효성뿐만 아니라 적법성까지 추정함)

□ **유효성 추정설(통설·판례)**
 □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
 → 위법 → 무효(공정력 [X])·취소(공정력 [O])
 공정력 [X] | 공정력 [O]
 (적법성은 추정하지 못하고 유효성만 추정함)

097 (051)	공정력의 인정근거 - 이론적 근거
<p>① 자기확신설(=판결유사설) -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공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과 유사함</p> <p>② 국가관위설 -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함</p> <p>③ 예선적 특권설(프랑스) -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인정되는 특권 ← 독일 [×]</p> <p>④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설 -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력도 인정되는 것이다. - 비판> 역전의 논리[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정력을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소송이 인정된다.]</p> <p>⑤ 법적 안정성설(행정정책설) - 다수설 -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것이다.</p>	

□ 자국예취법

- ※ **실정법적 근거**
- **현행법(실정법)상 공정력을 직접적·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.**
 - **취소쟁송제도, 직권취소제도는 공정력을 간접적·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.**
 - **집행부정지원칙은 공정력에 대해서 다수설은 부정하지만 소수설은 인정한다.**

098	“공정력”과 관계 “없는” 것
<p>① 집행부정지의 원칙</p> <p>② 입증책임</p> <p>③ 치유사유</p>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auto;"> <p>< 공정력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효성의 추정력 [O] · 적법성의 추정력 [×] </div>	
<p>□ 공정력 - 한계 (공정력이 인정 [×]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권력적 행정작용(관리작용[공법상계약], 국고작용)에는 공정력이 인정 [×] - 무효사유를 간직한 행정행위(권력적 작용)에는 공정력이 인정 [×] - 사실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 [×] - 입증책임 무관설 (←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분야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 함.) - 선결문제 - 민사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[O] 	

099	불가변력이 적용되는 일정한 행정행위
<p>□ [~]는 취소·변경·철회를 할 수 없다.</p> <p>※ 다수설 - 준사법적 행정행위(토지수용의 재결), 확인행위(당국 교도소 발행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당선자 결정 ②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(← 신체검사, 건축물의 준공검사) ③ 교과서 검·인정 ④ 도로구역·하천구역의 결정(← 토지경계의 사정) ⑤ 소득금액의 결정 ⑥ 발명특허 ⑦ 행정심판의 재결(=이의신청의 재결) ← cf> 토지수용의 재결 : 대리 □ 공통점> 준사법적 행정행위(통고처분·행정심판의 재결·토지수용의 재결) ⑧ 징계처분의 결정 ⑨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	

□ 당국 교도소 발행

- ※ **소수설**
- ① **준사법적 행정행위(확인행위)**
 -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
ex> **통고처분**
토지수용위원회의 **확정재결**(대리행위)
 - ③ **수익적 행정행위(허가·특허·인가)**
ex> 건축허가, 영업허가
→ (다수설)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
→ (소수설) 불가변력 때문에
 - ④ **사정재결**(행정심판), **사정판결**(행정소송)
→ (다수설) 공공복리 때문에
→ (소수설) 불가변력 때문에

100 (052)	무효와 취소의 기준		
행정행위가 중대한 법률요건을 위반할 것 (하자는 중대하다.)	중대성	and[O] or[X]	명백성 [?]이 봤을 때(외견상) 하자가 명백할 것
① 중대·명백설(통설·판례)	[O]	필요요건[O] - 일반인	
② 조사의무설	[O]	필요요건[O] - 일반인 + 공무원	
③ 명백성 보충요건설	[O]	필요요건[X] 보충요건[O] □제3자의 신뢰보호와 관련되면 명백성으로 본다.	
④ 중대설	[O]	[X]	
⑤ 구체적 가치형량설	구체적 사안마다 이익형량(가치형량)을 하여 무효·취소를 판단하는 것		

□ **중조 명중구**

101 (053)	하자의 승계의 논의의 전제		
① 전 :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둘 다 전(처)분성 이 있어야 한다. ② 하 : 선행행위 - 하자 [O], 후행행위 - 하자 [X] ③ 취 :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 여야 한다. □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 라면 하자가 후행행위에 바로 승계 되어 논의[X] ④ 제 : 선행행위의 취소사유가 제소기간 이 경과되어야 한다. → 불가쟁력 의 발생 ※ 하자의 승계이론(통설·판례) □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 해서 하나 의 법적효과를 발생 → 하자의 승계를 인정 □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독립 해서 별개 의 법적효과를 발생 → 하자의 승계를 부정			

□ **천하취제**

102 (054)	소수설 -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(규준력) 이론		
※ 요건(구속력의 한계) : 요건을 갖춰야지 후행행위를 구속한다. □후행행위도 다를 수 없다. → 하자승계 [X] □4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→ 구속 [X] → 후행행위를 다를 수 있다. → 하자승계 [O] ① 대인적 한계(주관적 한계) →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수범자(상대방) 가 동일해야 함 ② 대물적 한계(객관적 한계) →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목적 이 동일해야 함 ③ 시간적 한계 → 선행행위에 발생한 사실관계(법률관계) 가 후행행위에 계속되어야 함 ④ 추가적 한계 → 구속하는 것이 상대방이 예측가능 하고 수인가능성 이 있어야 함 판례 > 개별공시지가결정 (시장이 결정) → 양도소득세부과 : 하자의 승계를 인정			

□ **인물시추**

※ 개별공시지가결정(선행행위)·양도소득세부과(후행행위) - 독립 해서 별개 의 법적효과를 발생 → 통설·판례에 따르면 하자의 승계를 부정 → but 예외적으로 “하자의 승계를 인정 ” ㉠ 개별공시지가 단계 → 개개인에게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다. ㉡ 개별공시지가 단계 → 상대방이 유리·불리를 예측 할 수 없다. ㉢ 개별공시지가 단계 → 소를 제기할 기대가능성이 없다. ㉣ 선행행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 → 수인가능성도 없다. ㉤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를 구속하지 못 한다. → 하자의 승계 [O]			
--	--	--	--

103 (055)	“하자의 승계”를 “인정”한 판례
<p>①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사이</p> <p>② 국립보건의원장의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안경사면허취소처분 사이</p> <p>③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사이</p> <p>④ 조세채납처분에서의 독촉·재산압류·매각·총당의 각 행위 사이</p> <p>⑤ 행정대집행에 있어서의 계고·통지·실행·비용징수의 각 행위 사이</p> <p>⑥ 독촉과 가산금·증가산금징수처분 사이</p> <p>⑦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사이</p> <p>⑧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사이</p> <p>⑨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사이</p> <p>⑩ 무효인 조례와 그에 근거한 지방세부과처분 간</p> <p>⑪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호(한)지예정지지정처분과 공작물이전명령 간</p>	

- **한지의사 안경사**
- **귀속재산 압류 통지**
- **독기분개 무효**

104	“하자의 승계”를 “부정”한 판례
<p>①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 사이(= 하명처분과 계고 간)</p> <p>②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사이</p> <p>③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사이</p> <p>④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사이</p> <p>⑤ 토지등급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사이</p> <p>⑥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 사이</p> <p>⑦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사이(=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간)</p> <p>⑧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처분 사이(= 사업인정처분과 재결처분 간)</p> <p>⑨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 사이</p> <p>⑩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사이</p> <p>⑪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사이</p> <p>⑫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사이</p> <p>⑬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사이</p> <p>⑭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사이</p>	

- ⑮ 지방의회에서의 **의안의 의결**과 지방세부과 간
- 감사원의 **시정요구결정**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간
- **도시계획시설변경·지적승인고시처분**과 **사업계획승인처분** 간

105 (056)	전환의 요건
<p>판례 > 독립한 행정행위 □처분성 [O]</p> <p>① 하자있는 행정행위와 전환되는 행정행위 간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.</p> <p>②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+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③ 형(행)정청의 의사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. 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. (견해대립 있음)</p> <p>④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.</p>	

- **동성형제**
- ※ **치유 - 통설·판례**
- **취소사유**에서만 발생
- **무효사유** [X]
- **형식**과 **절차상**의 **하자** [O]
- **내용상**의 **하자** [X]
- ※ **전환 - 다수설·판례**
- **무효사유**에서만 발생
- **취소사유** [X]
- **최근의 유력설·독일의 행정절차법**
- **무효사유 + 취소사유**에서도 인정

□ 당사자가 그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환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로 전환된다. ← 견해대립 있음

□ 당연 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. [O]

109	취소사유 - 1
<p>① <u>주체에 관한 하자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권한 초과 행위 ㉡ 상대방의 사기·강박·중립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㉢ 타기관의 자문을 결여한 행위 (다수설) ㉣ 착오의 결과로서 위법·부당하게 된 경우 <p>② <u>내용에 관한 하자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위험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㉡ 공익위반(부당한 행위) 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㉣ 불문법, 즉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㉤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의 일탈·남용 	

110	취소사유 - 2
<p>③ <u>형식에 관한 하자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설 > 무효 - 판례 >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·세율·세액·산출근거·납부기한·납부장소 중 어느 하나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취소사유로 보고 있음 ㉡ 경미한 형식을 결여한 행위 <p>④ <u>절차에 관한 하자</u></p> <p>① <u>일반론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설 > ㉠ <u>절차규정이 당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인 경우</u> 이를 위반하면 → 무효 ㉡ <u>절차규정이 단순히 행정의 신중성 등을 위한 것인 경우</u> 이를 위반하면 → 취소사유 	

- **판례** > 과거에는 절차위반의 하자를 무효로 한 예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**취소사유**로 보고 있음

② 필요적 공고나 통지 그 자체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

③ 경미한 절차를 결여한 행위

111	무효사유

112	공법상계약이 “아닌” 것
<p>① 국·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계약, 지하철의 승차, 관용자동차의 폐차불하계약, 국영기차내의 광고물부착(사법상계약)</p> <p>② 공사도급계약(ex> 도청청사건축계약, 도로건설도급계약 등) 물품매매(납품)계약(사법상계약)</p> <p>③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매매계약(사법상계약)</p> <p>④ 국유잡종재산의 매각(국고작용)</p> <p>⑤ 각종 조합의 설립행위(합동행위) - 산림조합설립행위, 산림조합연합회설립행위, 시·군조합설립행위 등</p> <p>⑥ 행려병자의 보호(공법상 사무관리)</p> <p>⑦ 토지수용의 재결(행정행위-대리) → cf> 토지수용의 협의(학설-공법상계약)</p> <p>⑧ 공용부담(권력작용) → cf> 임의적 공용부담(공법상계약)</p> <p>⑨ 지방의회의 의결(합성행위)</p>	

113 (060)	확약의 법적성질과 법적근거
<p>□법적성질> 행정행위성 인정 여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학설 : 긍정설(다수설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판례 : 부정설 → 행정행위성[×] → 처분성[×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□but 의무이행심판[○]·거부처분취소소송[○]·부작위위법확인소송[○]</p> <p>□법적근거> 필요[×] ← 수확집 제공지</p> <p>□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확약을 할 수 있는가?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통설·판례> 긍정설</p> <p>□근거> 신뢰보호설 → 판례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본처분권한포함설 → 다수설</p>	

□ **신판 본다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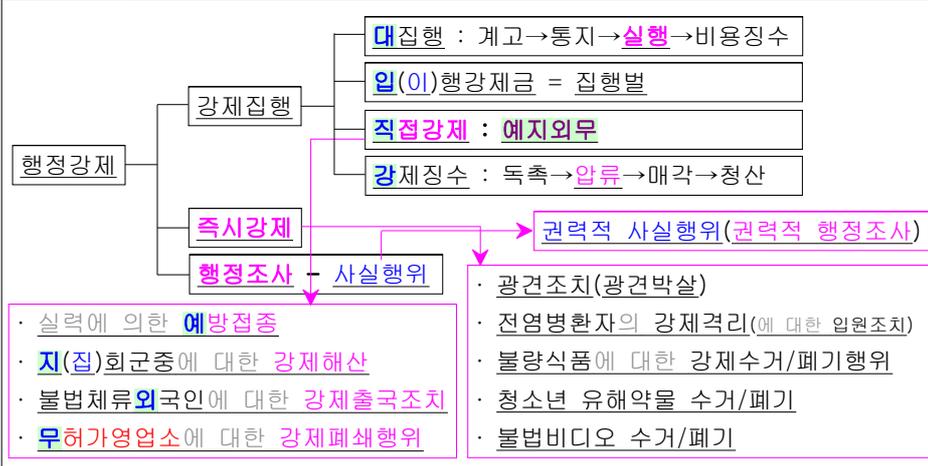
114	확약의 요건
<p>① 주체 : 본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</p> <p>② 내용 : 적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통설> 기속행위·요건사실이 완성된 후에도 확약[○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□논거> 예지이익 = 기대이익 = 준비이익 = 대처이익</p> <p>③ 형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㉠ 독일의 행정절차법 : 서면[○], 구술[×] ← 명문의 규정[○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㉡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: 특별한 규정[×] ← 명문의 규정[×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㉢ 우리나라는 구술로 확약이 가능 한가? ㉠ 견해대립[○], ㉡ 가능(다수설)[○]</p> <p>④ 절차 : 법령에 본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면서 위의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.(통설)</p>	

115 (061) 판례가 “공법상 계약”에 관한 소송을 “당사자소송”으로 처리한 판례

① 노래(가) :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
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
 ③ 지방전문직공무원(서울대공전술연구소 연구원) 채용계약의 의사표시
 ④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

□ 가무전공

116 “권력적 사실행위”의 예
 ↔ 비권력적 사실행위(행정지도, 도로청소)



- ※ 강제집행과 즉시강제
 - ① 공통점 > 의무자의 신체·재산에 직접적인 실행행사를 하는 것
 - ② 차이점 >
 - ㉠ 강제집행 - 의무불이행을 전제 [O]
 - ㉡ 즉시강제 - 의무불이행을 전제 [X]
- ※ 해산명령 - 행정행위 [O]
 - 법적성질 > (불특정인) 대인적 일반처분
 - i) > (특정인) 하명
- ※ 강제해산 - 행정행위 [X]
 - 권력적 사실행위 [O] → 처분성 [O]

117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

		행정쟁송	손해전보 등(결과제거청구권)
권력적 사실행위 □ 처분성 [O]	단기간 종료 □ 대집행의 실행 광견박살	[X] ← 소의 이익 [X] □ 각하	[O] : 실효적 수단
	장기간 계속 □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	[O] : 원칙	[O]
비권력적 사실행위 □ 처분성 [X]	행정지도 □ 통일번호	[X] ← 처분성 [X]	[O] : 실효적 수단
		[X] ← 처분성 [X]	원칙 > [X] : 상대방의 협력성 예외 > [O] □ 강박에 의한 행정지도

118 (062)	비공식적 행정작용 [광의]의 종류
<p>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경고 ㉡ 교시 ㉢ 정보제공 ㉣ 권고 <p>② 행정기관이 국민과 협력해서 행하는 행정작용 [협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부관안 및 처분안의 사전제시 ㉡ 규범 대체형 합의 -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하는 합의 ex> 친환경적인 용기의 제작 ㉢ 규범 집행형 합의 - 규범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는 합의 ex> 노후된 시설의 개선 ㉣ 사전절충 ㉤ 응답유보(묵인) 	

□ 경교정권 부대집사응

119 (063)	집중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택지개발촉진법 ② 시(신)항만건설촉진법 ③ 도시개발법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고속철도건설촉진법 	

□ 택시도산국고

120	행정절차법의 필요성과 각 국의 행정절차제도
<p>※ 필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행정의 민주화 ② 행정의 적정화 -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 ③ 행정의 능률화 ④ 국민의 권익보호(신중·공정 → 투명 → 행정규제수단) <p>□ 행정의 신속성[×], 행정의 탄력성[×], 행정규제완화[×], 사후적 구제[×]</p> <p>※ 각 국의 행정절차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영·미 - 자연적 정의의 원칙(편견배제의 원칙, 쌍방청문의 원칙) ② 대륙법계(2차대전 후) - 초기 :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- 후기 :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	

③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실체법적 규정을 많이(대폭) 포함	
④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원칙> 절차규정의 입법화	
예외> 통칙적 규정, 처분의 정정	
행정지도 등에 관한 일부규정	
□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.[×]	
□ 실체규정을 대폭 포함하고 있다.[×]	
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는	
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일반원리라고 판시	

124 (064,065,066)	행정절차법의 내용 (□)
<p>※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규정 ←</p> <p>① 목적 - 행정참여, 공정성, 투명성, 신뢰성 ②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[실체법적 규정] ③ 투명성의 원칙과 법령해석 요청권 [실체법적 규정] ④ 행정청의 관할 ⑤ 행정청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⑥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[자연인·법인] ⑦ 송달</p> <p>※ 행정절차법의 규정내용이 아닌 것은?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조사, 공법상계약, 행정강제, 행정계획</p>	

<p>□ 처신입행지, 목신투관응당송, 기준이 방문 고정</p> <p>※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의 공통절차</p> <p>① 처분기준의 설정(공표) ② 처분의 이유제시(이유부기) ③ 처분의 방식(문서주의) ④ 행정심판·소송 관련사항의 고지 ⑤ 처분의 정정</p> <p>cf> 처리기간의 설정·공표[×]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적 처분절차</p>
--

125	통칙적 규정 - 1
<p>① 목적 -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, 행정의 공정성·투명성·신뢰성을 확보 ②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[실체법적 규정] ③ 투명성의 원칙과 법령해석 요청권 [실체법적 규정] ④ 행정청의 관할</p> <p>㉠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: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</p> <p>㉡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 :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당해 행정청[×]</p>	

<p>□ 목신투관응당송</p>

126	통칙적 규정 - 2
<p>⑤ 행정청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</p> <p>㉠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</p> <p>㉡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㉢ 인원·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㉤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포함)·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㉥ 다른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</p> <p>㉦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</p> <p>㉧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㉨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	

<p>□ 목신투관응당송</p>

127	통칙적 규정 - 3
<p>⑥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</p> <p>㉠ 당사자 등의 자격 : 자연인, 법인 등</p> <p>㉡ 대표자</p> <p>㉢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. (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은 반드시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 可)</p> <p>㉣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→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[O] 이 경우 당사자 등이 대표자의 선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→ 행정청이 직접 선정[O]</p>	

☐ 목신투관응당송

128	통칙적 규정 - 4
<p>⑦ 송달</p> <p>㉠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이 가능</p> <p>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함</p> <p>㉢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 ☐ 사무원·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교부[O]</p> <p>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☐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(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)</p> <p>㉤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or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☐ 관보·공보·게시판·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</p>	

☐ 목신투관응당송

<p>㉥ 송달의 효력발생</p> <p>㉠ 도달주의 :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</p> <p>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☐ 내용을 확인[×]</p> <p>㉢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등에 공고하였을 경우 ☐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</p>	
--	--

129	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의 “공동절차”
<p>※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</p> <p>㉠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</p> <p>㉡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※ 처분의 이유제시의 예외사유</p> <p>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[O]</p> <p>㉡ 단순·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</p> <p>㉢ 긴급을 요하는 경우 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</p> <p>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행위에 따라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[×] ← 공법상계약(행정행위[×])</p>	

☐ 기준이 방문 고정

<p>※ 처분의 이유제시의 기능과 정도</p> <p>㉠ 기능 ← 방어기능[×]</p> <p>㉠ 통제기능, ㉡ 명확성확보기능</p> <p>㉢ 권익구제기능, ㉣ 정당성기능</p> <p>㉡ 정도</p> <p>㉠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와 처분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재 필요로 함</p> <p>㉢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만 명시하는 것은 위법</p> <p>· 이유제시의무는 불이익처분에 한하여 인정된다.[×] → 공동절차</p>	
--	--

130	신청에 의한 처분절차(수익적 처분절차)
<p>① 처분의 신청(문서의 형식) ← 구두로 신청[×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[×]”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보완은 인정[×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례>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.[O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례>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도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.[×] ← 없다</p> <p>②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신속처리의무</p> <p>③ 처리기간의 설정·공표 -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 ← 3회[×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처분기준의 설정공표[×]</p>	

131 (067,068)	불이익 처분절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약진, 정사
<p>① 처분의 사전통지</p> <p>② 의견청취절차(광의의 청문)</p> <p>㉠ 의견제출[약식청문(진술형청문)]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[×]</p> <p>㉡ 청문[정식청문(사실심형청문)]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[O]</p> <p>㉢ 공청회[정식청문(사실심형청문)]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[×]</p> <p>※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원칙> 정식청문, 진술형청문, 비공개청문</p>		

132	불이익 처분절차 <input type="checkbox"/> ① 처분의 “사전”통지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통지제도[×]</p> <p>※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</p> <p>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 <p>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</p> <p>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례>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.[O]</p>	

133 불이익 처분절차 □ ② 의견청취절차 - 1

② 의견청취절차(광의의 청문)

※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①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 (→)
- ②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

※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[×]

-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
-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

※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

-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
-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

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

·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.[×]

※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

-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
- ③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134 불이익 처분절차 □ ② 의견청취절차 - 2

㉠ 의견제출 ← 의견제출에는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[×]

- ㉡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·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- 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← 행정청은 ~~~~ 반드시 따라야 한다.[×]
- ㉣ 판례>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.

□ 판례는 법령상 확정된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의견진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.[×]

□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 할 수 있다.[×]

135 (069) 불이익 처분절차 □ ② 의견청취절차 - 3

□ 청심(심)환!

㉠ 청문 - 통지> 10일전까지

- ㉡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? 원칙> 위법이 아니다. → 유효 예외> 위법 ←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
- ㉢ 원칙> 비공개 예외> 공개 - ㉠ 당사자의 공개신청 ㉡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← 청문을 직권으로 공개[O] 예외에 대한 예외> 비공개 -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㉣ 청문주재자 - 행정청의 소속직원이 가능[O]. 행정청이 선정함(← 법원[×])
- ㉤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

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.[×], ←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[×]

㉥ 증거조사 :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.

136 불이익 처분절차 □ ② 의견청취절차 - 4

□ 청심(심)환!

㉠ 청문 - 통지 > 10일전까지

- ㉠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**정당한 사유없이**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**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**한 경우
 - 이들에게 다시 **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**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
- ㉡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**정당한 사유로**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 -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**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**하여야 하며,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음
- 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출받은 청문조서, 청문주재자의 의견서,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**상당한 이유가 있다고**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← 행정청은 청문절차에서 개진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.[O]

㉣ 청문에는 문서열람 및 복사청구권 [O]

□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← 공익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다.[X]

㉤ 의견 제출 □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 [X]

㉥ 청문 □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 [O]

㉦ 공청회 □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 [X]

137 불이익 처분절차 □ ② 의견청취절차 - 5

㉧ 공청회 - 통지 > 14일전까지

- ㉧ 행정청은 공청회와 **병행**하여서 **만**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. ←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[X]
- ㉨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**누구든지**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.
- ㉩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,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**발표내용을 제한**할 수 있고,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,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㉪ 공청회에는 문서열람권 및 복사청구권 [X]
- ㉫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**공청회·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**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**상당한 이유가 있다고**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138^[055] 신고 - 사인의 공법행위

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(전형적 신고)

= 자기완결적 신고 = 자족적 신고

- 행정절차법상의 신고
-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없다.
- 수리·거부 → 처분성 [X]

- 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
- 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
- ③ 공동주택 입주자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

수리를 요하는 신고(변형적 신고)

= 행위요건적 신고

- 완화된 허가제
-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다.
- 수리·거부 → 처분성 [O]

- ① 건축법상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
- ②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
-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
- ④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

※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 제출시 행정청의 처리과정

- ①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.

판례 >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. (위법)

139	행정상 입법예고
<p>①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</p> <p>② 예고기간 > 20일 이상 ← 14일 [×]</p> <p>③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p> <p>④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⑥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가능하다.</p> <p>⑦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㉡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㉢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㉣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㉤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	

140	행정예고
<p>①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사항(정책·제도·계획 등)을 알리는 제도</p> <p>② 예고기간 > 20일 이상</p> <p>③ 행정예고의 대상 ←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[×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㉡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㉢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㉣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<p>④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㉡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	

141 (070)	행정지도 - 행정지도의 원칙
<p>① 비권력적 사실행위 → 처분성 [×] → 행정쟁송 [×]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→ 손해전보 등 → 원칙 [×] : 상대방의 협력성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→ 예외 [O] : 강박에 의한 행정지도</p> <p>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 ← 신뢰보호의 원칙 [×],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[×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례성의 원칙 (= 과잉금지의 원칙) [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] · 염(임)의성의 원칙 [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] · 불이익 조치 금지의 원칙 · 행정(지)도 실명제 [신분] ← 익명제 [×] 행정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만 해야 한다. [×] · 명확성의 원칙 [취지·내용] · 문서교부 요구권 (= 서면교부 청구권) →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	

□ **비엄불치명문**

1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- 1

① 문서열람청구권 vs 정보공개청구권

행정절차법상의 문서열람청구권	처분의 상대방	적법절차의 원칙	행정절차에 특정
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권	모든 국민	알권리	모든 정보

- ② 필요성(목적) : 국민의 '알권리' 충족(보장) ✓ 행복추구권 [×]
- ③ 법적근거 : 헌법 : 헌법 §21의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의 근거를 도출
 조례 : 정보공개법 §4 ②에 명시적 규정이 있음
- ④ 정보 :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 등 ← 예산액 [×]
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(작성주체 [공무원따인] 불문)
 판례 >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(사본도 가능함)
- ⑤ 적용배제사항 - 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
 ㉡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

1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의 "공공기관"

1. 국가기관(행정기관, 국회, 법원)
 2. 지방자치단체
 3. 정부투자기관
 4.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
 - ① 초·중·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**각급학교**
 -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**지방공사** 및 **지방공단**
 - 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**정부산하기관**
 - ④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**특수법인**
 -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**사회복지법인**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**비영리법인**
- 언론기관 [×], 노동조합 [×]

1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- 2

- ⑥ 정보공개청구권자 ← 이해당사자 [×]
 - ㉠ 모든 국민(자연인, 시민단체, 법인,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불문, 설립목적도 불문)
 - 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(↓)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- ㉣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 ⑦ 정보공개청구방법 : 서면(정보공개청구서) 또는 구술
- ⑧ 정보공개심의회 : 공공기관에 설치함
 정보공개여부심의
- ⑨ 정보공개위원회 : 행정안전부장관소속 ← 대통령소속 [×], 국무총리소속 [×]
 정책수립, 제도개선, 기준수립,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
- ⑩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, 비공개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
- ⑪ 비용부담 : 청구인 ← 무료 [×], 공공기관 [×]

145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- 3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㉔ **부분공개도** 할 수 있다.
즉시공개의 대상(✓)
 - ㉠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
 - ㉡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
 - 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
 - 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- ㉕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146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- 4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14 행정소송
 - 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중사 할 수 있다.
 - ㉡ 소송요건 - 원고적격 : 모든 국민[자연인, 법인, 권리능력 없는 사단·재단]
 - 대상적격 :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
 - 행정소송의 대상[O], 헌법소원의 대상[×] ← 보충성의 원칙
 - ㉢ 본안
 - ㉠ 비공개사유의 입증책임 : 공공기관
 -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
 - ㉡ 비공개대상으로 본 판례

- ㉣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(숙박시설)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에 관한 정보
- 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
- ㉥ 공무원이 불우이웃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지위에서 개인자격으로 격려 및 위로의 명목으로 수령한 물품
- ㉦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·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
- ㉧ 법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
- ㉨ 보호관찰법 소정의 보호관찰관련통계자료
- ㉩ 공개대상으로 본 판례
 -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(←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) □ 교수들의 채점은 공개대상[×]
- ㉪ 판례 >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되는 공개정보에 대응해서 일부취소판결을 내려야 한다.
- ㉫ 공개방법 -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.
- 15 제도총괄 : 행정안전부장관

150	정보공개법 - “비공개대상정보” - 1
<p>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.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이 위임한 명령 : 판례> 법규명령(위임명령)</p> <p>② 국가안전보장(방위)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<p>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← 공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[×]</p> <p>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 <p>⑤ 감사·감독·조사·형제·징계·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	

151	정보공개법 - “비공개대상정보” - 2
<p>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</p> <p>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</p> <p>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 <p>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</p> <p>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</p> <p>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/p>	

자치단체단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[×]

<p>⑦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</p> <p>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p> <p>㉡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</p> <p>□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</p>	
---	--

152	정보공개법의 “공개대상정보”와 관련된 판례
<p>①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</p> <p>②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</p> <p>③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</p> <p>④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에 송금한 수익금총액과 교도소장의 배당수익금 및 사용내역,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수</p> <p>⑤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</p> <p>⑥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·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</p> <p>⑦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</p>	

153 정보공개법의 “비공개대상정보”와 관련된 판례

- ①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**채정위원별 채점 결과**
- ②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
- ③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
- 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(숙박시설) 해제결정에 관한 **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정보**
- ⑥ 공무원이 불우이웃이나 이재민으로서의 지위에서 **개인자격으로 격려 및 위로의 명목으로 수령한 물품**
- ⑦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**간담회·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**
- ⑧ 법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 중 **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**
- ⑨ **보호관찰법 소정의 보호관찰관련통계자료**
- ⑩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 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
- ⑪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(KMH) 도입사업에 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

15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1

- ① 법적근거 : 헌법 §17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(프라이버시권) (← **다수설**)
- ② 목적 : 공공기관의 컴퓨터·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·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
 민간인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[×], 수작업[×], 모든 정보보호[×]
- ③ 공공기관 : 주택조합[×]
- ④ 개인정보 :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← 사자[×], 법인[×]
→ 개인정보가 정보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[×]
- ⑤ 적용배제사항
ⓐ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
ⓑ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
- ⑥ 개인정보보호의 원칙
- ⑦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·종교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15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“공공기관”

- 1. 국가행정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
 - ① **각급학교** ② **특수법인**
 - ③ **공공기관** ④ **지방공사 및 지방공단**
- 주택조합[×]
- <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>
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 불가능한 기관
-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·복지증진·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,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
- ③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
156	개인정보보호의 원칙
<p>□공공기관의 장은</p> <p>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<u>그 목적을 명확히</u> 하여야 하고, <u>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</u>하고 <u>정당</u>하게 수집하여야 하며, <u>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</u>하여서는 <u>아니</u> 되고</p> <p>② 처리정보의 <u>정확성</u> 및 <u>최신성</u>을 보장하고, <u>그 보호의 안전성</u>을 확보하여야 하고</p> <p>③ 개인정보관리의 <u>책임관계</u>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</p> <p>④ 개인정보의 수집·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<u>공개</u>하여야하며, <u>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</u> 등 <u>정보주체의 권리</u>를 보장하여야 한다.</p>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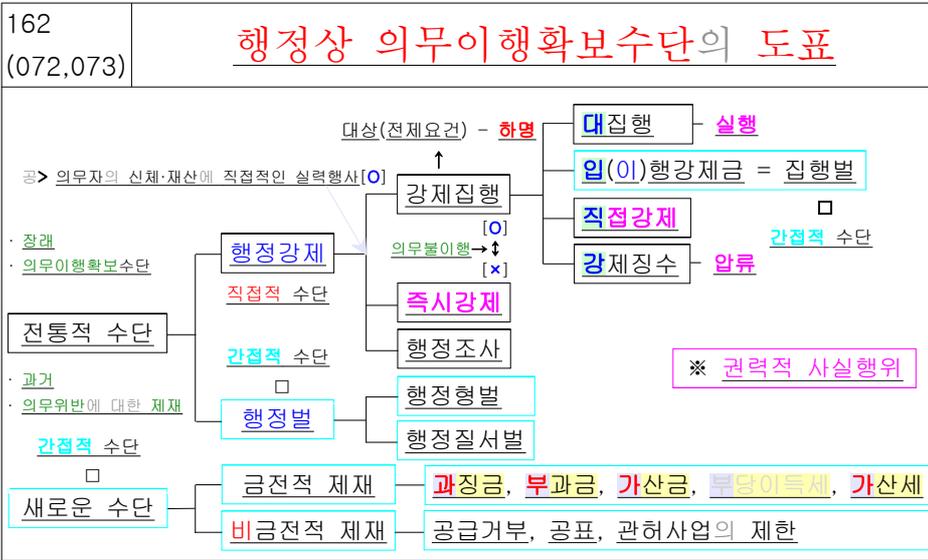
157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2
<p>⑧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이용범위,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⑨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필요한 범위 안에서</u> 개인정보화일을 보유 할 수 있다. ← <u>제한이 없다</u>[×]</p> <p>⑩ 개인정보화일의 <u>공고</u> : <u>통지</u>[×], <u>즉시 관보에 게재</u>[×], <u>정보통지청구권</u>[×]</p> <p>⑪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<u>위탁</u>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<u>안전성 확보</u>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⑫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</p>	

158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3
<p>⑬ 원칙>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사용금지</p> <p>예외>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</p> <p>① 정보주체의 <u>동의</u>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<u>제공</u>하는 경우</p> <p>②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<u>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</u>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</p> <p>㉔ <u>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</u>을 위하여 <u>외국정부</u> 또는 <u>국제기구에 제공</u>하는 경우</p> <p>㉕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<u>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</u>하는 경우</p> <p>⑥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<u>의사표시</u>를 할 수 <u>없는</u> 상태에 있거나 <u>주소불명</u> 등으로 <u>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</u>하는 것이 <u>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</u>되는 경우</p> <p>㉖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</p> <p>㉗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p>	

159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4
<p>⑭ 정보열람청구권 :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(구두[×])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← 정보공개법(모든 국민)</p> <p>⑮ 정보정정청구권</p> <p>□ 행정심판청구권 :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[○] □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재결신청[×]</p> <p>□ 행정소송제기권 :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[○]</p> <p>□ 정보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 ← 정보통지청구권[×] □정보열람청구권(대리열람청구권), 정보정정청구권(대리정정청구권), 행정심판제기권, 행정소송제기권</p> <p>□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	

160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5
<p>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.</p> <p>□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: 국무총리소속 ← 행정안전부[×] □정보공개위원회(정보공개법) : 행정안전부장관소속 □위원장(행정안전부차관)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, 임기 2년</p> <p>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~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.</p> <p>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~ 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.</p> <p>□공공기관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관여 할 수 없다.[×] ← 있다</p>	

161	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- 6
<p>□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</p> <p>① 수집제한의 원칙</p> <p>㉠ 정보정확성의 원칙(데이터질의 원칙) : 갱신[○] ← 수집당시의 정보의 계속유지[×]</p> <p>㉡ 목적특정의 원칙 ← 목적자유의 원칙[×], 정보사용자유의 원칙[×]</p> <p>㉢ 이용제한의 원칙</p> <p>㉣ 보안조치의 원칙</p> <p>㉤ 공개의 원칙 ← 비공개의원칙[×], 공개금지의 원칙[×]</p> <p>㉦ 개인참가의 원칙</p> <p>㉧ 책임소재의 원칙</p> <p>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← 통보[×]</p> <p>□ < 적용배제사항 ></p> <p>①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</p> <p>㉠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처분,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</p> <p>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</p> <p>㉢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</p> <p>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</p>	



□ 대입직강,
과부가부가

163 행정강제 → 강제집행 → 대집행 → 행정대집행법 §2

①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← ex>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법률에 의거한[근거한]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

②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③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(→)

④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□판례> 0.02㎡의 베란다 돌출사건 →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[X] → 대집행[X]

⑤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

⑥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.[재량행위[다수설]] ✓ □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대집행을 해야 하는가?

③ 다른 수단으로써 ~~~
□대집행보다 경미한 수단
ex> 행정지도·시정명령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.
□필요성의 원칙
최소침해의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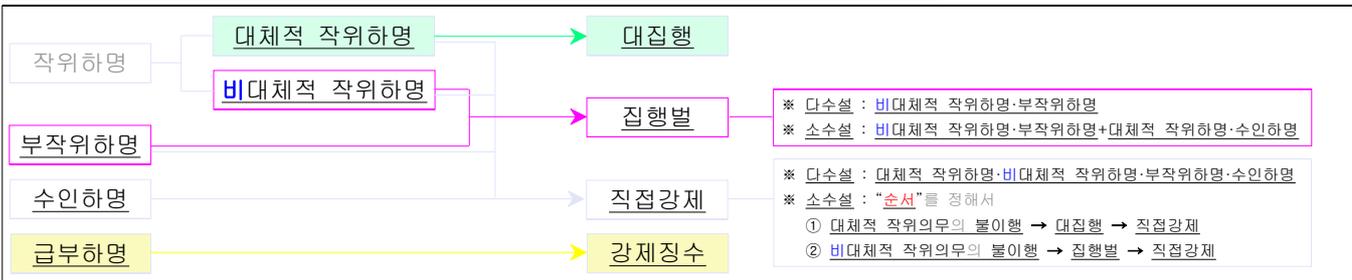
164 ② 대체적 작위의무

※ 대집행의 대상[X] - 비대체적 작위의무, 부작위 의무 (→ 집행벌, 직접강제)

① 비대체적 작위의무
㉠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
㉡ 의사의 진료의무
㉢ 국유지퇴거의무
㉣ 전문가의 감정 의무
㉤ **건물의 명도의무**
㉥ **토지·건물의 인도 의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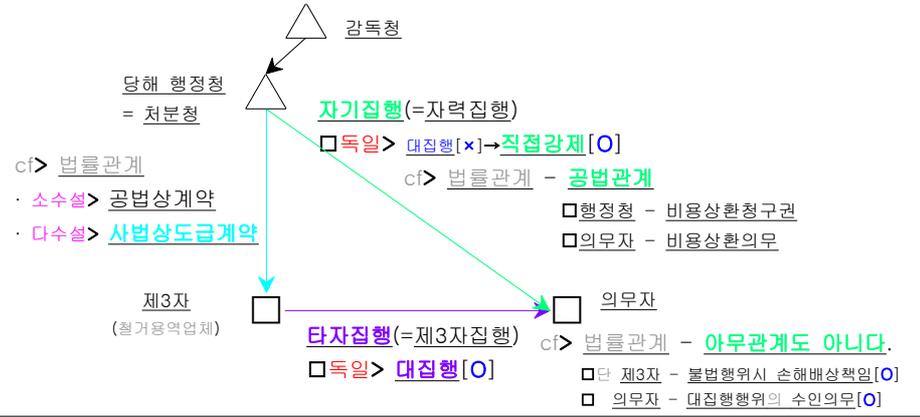
② 부작위의무
㉦ 허가 없이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
㉧ 야간통행금지 의무
cf> 부작위의무 + 행정청의 명령 □법적근거[O]
→ 작위의무로 전환
→ 대집행[O]

※ 대집행의 대상[O]
□대체적 작위의무[O]
① 위법건물철거의무
② 교통장애물제거의무
③ 위험축대파괴의무
④ 불법광고판철거의무
⑤ 건물의 이전·개량·청소의무
⑥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
⑦
⑧
⑨
⑩



165 ⑤ **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**

※ **대집행의 주체** - **당해 행정청** [O] ← **제3자** [X], **감독청** [X]



166 (074) **대집행의 절차**

계통실비

※ **계고** → **통지** → **실행** → **비용징수**

- 공통점> 처분성 [O], 하자승계 [O]
- 계고·통지 : 비상사·위험이 절박할 때 **생략** 할 수 있음

- ① **계고** - 상당한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“대집행한다.”는 뜻을 문서로 통지
- 법적성질>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**통지** → **처분성** [O]
 - 반복된 계고 : **1차** 계고 하나만 **처분성** [O]
 - cf> 반복된 거부행위 : 1차·2차·3차 거부 **모두 처분성** [O]
 - 요건> ㉠ 계고시 “상당한 기간”을 정하여야 한다.
 - 상당한 기간 [X] → 위법 [O] 판례> 치유 안됨
 - 계고시 상당한 기간 [X] → 통지시 기간을 연장 [O] → 위법 [O]
 - ㉡ 계고시 “문서의 형식”으로 해야 한다.
 - 구술로 한 계고 → 위법 [O] → 무효

- ㉢ 계고시 “의무의 내용이 특정”되어야 한다.
 - 철거명령서·계고서 **모든** 문서를 종합 판단하여 특정되어야 한다.
- ㉣ 계고시 **대집행의 요건이 충족**되어야 한다.
 -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(철거명령)과 계고는 결합될 수 있는가?
 - 학설 - 원칙> 결합 [X]
 - 예외> 결합 [O] ← 불가피한 사정, 긴급한 경우
 - 판례 - **정당한 기간이 부여**되어 있다면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에 철거명령이 결합해도 **적법**하다.

- ② **통지**
- ㉠ 대집행의 시기·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등을 문서로 통지
 - 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 → **처분성** [O]
- ③ **실행**
- ㉠ **권력적 사실행위** → 행정행위 [X] but **처분성** [O]
 - ㉡ 의무자가 저항 할 경우 실력으로 배제 할 수 있는가?
 - 학설> 팽팽! ← 상대적으로 풀기!
 - 독일행정집행법> 실력으로 배제 할 수 있다**는 명문의 규정 [O]
 - cf> 행정조사(통설) - 실력으로 배제 [X]
- ④ **비용징수**
- ㉠ 국제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따라 비용징수(독촉→압류→매각→청산)
 - ㉡ 문서로서 **비용납부명령(급부하명)** → **처분성** [O]
- cf> 협의의 소의 이익(통설·판례)
 실행의 단계까지 오면 계고·통지는 소의 이익이 없다.

167 (075) 행정강제 → 강제집행 → **이행강제금의 개별법률**

□ **전대 독점 부농**

※ **이행강제금의 개별법률**

- ① **건축법** → 특별한 불복절차[×] → 일반 행정소송[○]
- ② **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**
- ③ **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**
- ④ **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**
- ⑤ **농지법**

※ **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**

- **원칙** > 특별한 불복절차[○] → 행정소송[×] ← ②, ⑤
 □ **비송사건절차법** [과태료준용]
- **예외** > 특별한 불복절차[×] → 일반 행정소송[○] ← ①, ③, 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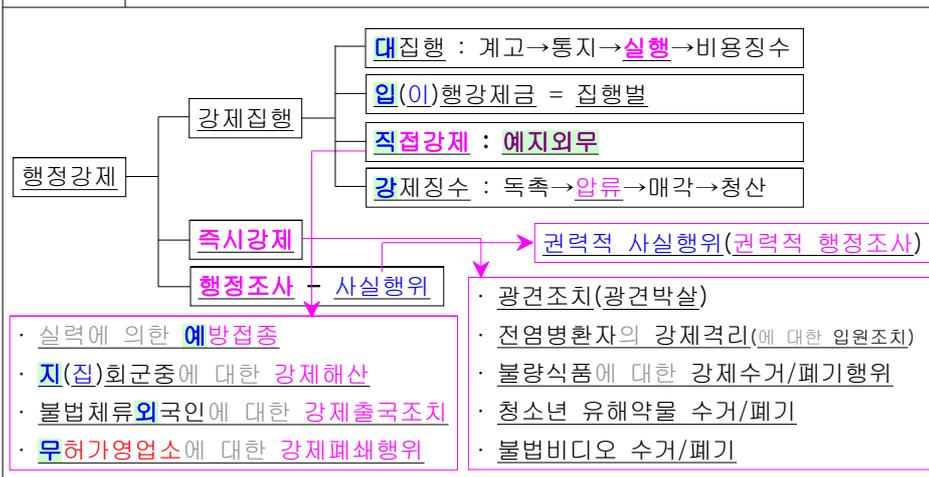
168 (076) **특별한 불복절차[○] → 행정쟁송[×] → 처분성[×]**

□ **농대**

- ① **통고처분** - 일반형사소송절차, 즉결심판절차가 있어서 행정쟁송[×]
- ② **과태료** - 비송사건절차법이 있어서 행정쟁송[×]
- ③ **이행강제금**
 - ㉠ 특별한 불복절차[○] - 비송사건절차법(과태료준용)이 있어서 행정쟁송[×]
 - ㉠ **농지법**
 - ㉡ **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**
 - ㉢ 특별한 불복절차[×] - 일반쟁송절차[○] 즉 행정쟁송[○]
 - ㉠ **건축법** → 행정쟁송[○]
 - ㉡ **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**
 - ㉢ **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**
- ④ **검사의 공소제기** / **검사의 불기소처분**
 - └─ 일반형사소송절차
 - └─ 항고 · 재항고
 가 있어서 행정쟁송[×]

169 (077) **직접강제의 예(권력적 사실행위)**

□ **예지의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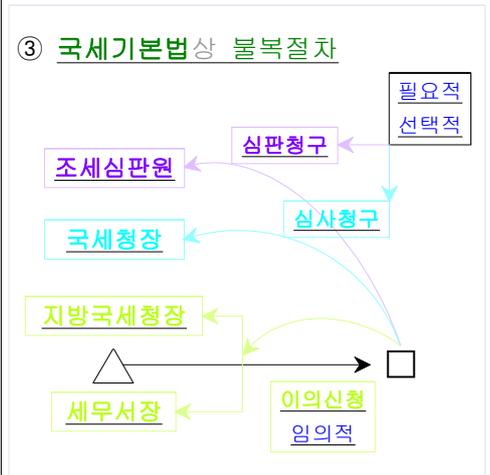


- ※ **강제집행과 즉시강제**
- ① 공통점 > 의무자의 신체·재산에 직접적인 실행행사를 하는 것
 - ② 차이점 >
 - ㉠ 강제집행 - 의무불이행을 전제[○]
 - ㉡ 즉시강제 - 의무불이행을 전제[×]
- ※ **해산명령 - 행정행위[○]**
 □ 법적성질 > (불특정인) **대인적 일반처분**
 if > (특정인) **하명**
- ※ **강제해산 - 행정행위[×]**
 □ 권력적 사실행위[○] → 처분성[○]

170 (078)	행정강제 → 강제집행 → 직접강제의 개별법률
① 군사시설보호법 ② 출입국관리법 ③ 신(식)품위생법 ④ 도로교통법 ⑤ 농약관리법 ⑥ 축산물위생처리법 ⑦ 먹는 물 관리법 ⑧ 공중위생법 ⑨ 방어해면법 □ 토지수용법 [×]	

□ **군출신 도농축 물공방**

171	행정강제 → 강제집행 → 강제징수
① 일반법 > 국세징수법 ← 강제징수법 [×], 국세기본법 [×] □ cf > 강제징수의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음 ② 강제징수의 절차 ✓ 독촉장은 15일 이내에 발부 ㉠ 독촉 :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 □ 판례 > 독촉절차를 결여한 체납처분의 효력은 취소사유 로 보고 있다. ← 무효 [×] □ 시효중단의 효과 > 독촉,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납입고지 ,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 ㉡ 체납처분절차 ← 체납처분절차는 사실행위 로 되어 있다. [×] ㉢ 압류 : 권력적 사실행위 ✓ 법적행위(행정행위) ㉣ 매각 - 원칙 > 공매(대리) ←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. - 예외 > 수의계약 ㉤ 청산 : 사실행위 □ 순서 > 체납처분비 → 가산금(이자) → 국세(원금)	



172 (079)	행정강제 →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
※ 실체법상의 한계 ① 소극성 에 따른 한계 → 소극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즉시강제를 발동 [○] 적극적 공공복리를 위해서 즉시강제를 발동 [×] ② 비례성 에 따른 한계 → 적합성·필요성·상당성의 원칙은 지켜야 함 ③ 보충성 에 따른 한계 → 최후수단 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할 수 없다. [○] ④ 급박성 에 따른 한계 →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이 있는 경우에 즉시강제를 발동 [○] □ 위험의 현재화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즉시강제를 발동 [○] □ 목적에 급박한 장애 가 있는 경우에 즉시강제를 발동 [○] 장애의 위험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발동 [×]	

□ **소비보급**

※ **절차법상의 한계 - 영장주의**

- ① **영장필요설**
- ② **영장불요설**
- ③ **절충설(다수설·판례)**
 - 원칙 > 필요 [○]
 - 예외 >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필요 [×]

173	“행정형벌”과 “행정질서벌”의 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행정형벌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행정질서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직접적 침해</td> <td></td> <td>간접적 침해</td> </tr> <tr> <td>형법상 9가지의 형벌</td> <td></td> <td>과태료의 부과</td> </tr> <tr> <td>형법총칙의 적용[O]</td> <td></td> <td>형법총칙의 적용[X]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고의·과실[O]</td> <td></td> <td>원칙> 고의·과실[X]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예외적인 대법원 판례> 고의·과실[O]</td> </tr> <tr> <td>죄형법정주의[O]</td> <td></td> <td>학설> 상대적으로 풀기</td> </tr> <tr> <td>□cf> 행정벌 : 죄형법정주의[O]</td> <td></td> <td>헌법재판소> 죄형법정주의[X]</td> </tr> <tr> <td>정식> 법원 - 형사소송법</td> <td></td> <td>정식> 법원 - 비송사건절차법</td> </tr> <tr> <td>약식> 법관 - 즉결심판절차 행정청 - 통고처분절차</td> <td></td> <td>약식> 행정청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행정형벌	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	행정질서벌	직접적 침해		간접적 침해	형법상 9가지의 형벌		과태료의 부과	형법총칙의 적용[O]		형법총칙의 적용[X]	고의·과실[O]		원칙> 고의·과실[X]		예외적인 대법원 판례> 고의·과실[O]	죄형법정주의[O]		학설> 상대적으로 풀기	□cf> 행정벌 : 죄형법정주의[O]		헌법재판소> 죄형법정주의[X]	정식> 법원 - 형사소송법		정식> 법원 - 비송사건절차법	약식> 법관 - 즉결심판절차 행정청 - 통고처분절차		약식> 행정청
행정형벌	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	행정질서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접적 침해		간접적 침해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형법상 9가지의 형벌		과태료의 부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형법총칙의 적용[O]		형법총칙의 적용[X]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의·과실[O]		원칙> 고의·과실[X]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예외적인 대법원 판례> 고의·과실[O]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죄형법정주의[O]		학설> 상대적으로 풀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□cf> 행정벌 : 죄형법정주의[O]		헌법재판소> 죄형법정주의[X]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식> 법원 - 형사소송법		정식> 법원 - 비송사건절차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약식> 법관 - 즉결심판절차 행정청 - 통고처분절차		약식> 행정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74 (080)	형법상의 9가지 형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 상실 ⑤ 자격 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↔ 과태료(행정질서벌) : 형벌[X] ⑨ 몰수 	

□ 사징금상정 벌구과몰

175	“과태료”의 특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행정질서벌의 일종 (행정벌 → 행정질서벌) ②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③ 행위자의 고의·과실이 필요 없다. ④ 헌법재판소> 죄형법정주의[X], 학설> 상대적으로 풀기 ⑤ 비송사건절차법 (행정소송의 대상[X] → 처분성[X] → 행정소송의 제기[X]) ⑥ 행정청과 조례로도 부과 할 수 있다. ⑦ 판례> 행정형벌과 병과 할 수 있다. cf> 다수설> 병과[X] ⑧ 과료(행정형벌)와 구별 된다. ⑨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과할 수 있다. ⑩ 의무의 해태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할 수 없다. ⑪ 과태료의 제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의 대상이 아니다. 	

176	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유무
다수설	판례
병과[×] ↑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	대법원 ↓ 과태료와 형사처벌[행정형벌]은 병과 할 수 있다.
	헌법재판소 병과[×]

177	병과
<p>※ 병과[O] =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[×] = 형사소추우선의 원칙이 인정[×] = 이중처벌이 가능하다. =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.</p> <p>※ 병과[×] → ① 행정벌(행정형벌, 행정질서벌) ↔ 형사벌 ② 행정형벌 ↔ 행정질서벌</p>	

178 (081)	통고처분의 적용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조경출 교관												
<p>① 의의 : 정식절차(형사소송절차)에 갈음해서 행정청(검사[×])이 범죄의 실증을 얻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(자유형[×], 징역형[×])에 상당하는 금액(범칙금[O], 벌금[×], 과료[×])의 납부를 명(통고)하는 것</p> <p>② 적용영역 : 전매법[×], 지방자치법에 규정[×], 모든 영역[×]</p>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㉠ 조세법</td> <td style="width: 60%;">조세범처벌절차법 → 일반형사절차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이행기간 : 15일</td> </tr> <tr> <td>㉡ 경범죄사법</td> <td>경범죄처벌법 → 즉결심판절차</td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이행기간 : 10일</td> </tr> <tr> <td>㉢ 출입국사법</td> <td>출입국관리법 → 일반형사절차</td> </tr> <tr> <td>㉣ 교통사법</td> <td>도로교통법 → 즉결심판절차</td> </tr> <tr> <td>㉤ 관세법</td> <td>관세법 → 일반형사절차</td> </tr> </table>			㉠ 조세법	조세범처벌절차법 → 일반형사절차	이행기간 : 15일	㉡ 경범죄사법	경범죄처벌법 → 즉결심판절차	이행기간 : 10일	㉢ 출입국사법	출입국관리법 → 일반형사절차	㉣ 교통사법	도로교통법 → 즉결심판절차	㉤ 관세법	관세법 → 일반형사절차
㉠ 조세법	조세범처벌절차법 → 일반형사절차	이행기간 : 15일												
㉡ 경범죄사법	경범죄처벌법 → 즉결심판절차	이행기간 : 10일												
㉢ 출입국사법	출입국관리법 → 일반형사절차													
㉣ 교통사법	도로교통법 → 즉결심판절차													
㉤ 관세법	관세법 → 일반형사절차													

- ③ 법적성질 : 준사법적 행정행위
- ④ 효과 : 통고처분 > 특별한 불복절차[O] → 행정소송제기[×]
- 통고처분 → 이행[O] → 처벌절차는 종료
 - 일사부재리의 원칙 → 다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.
 - 통고처분 → 이행[×] → 통고처분의 효력은 소멸됨
 - 행정청의 고발 → 검사의 공소제기 → 형사소송절차
 - 즉결심판절차(행정청의 즉결심판청구 ...) → 형사소송절차
 - 행정청의 고발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→ 위법 → 무효(치유[×])
 - 행정청의 통고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통고처분 없이 고발한 경우 → 적법

179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→ 특별절차 → **즉결심판**

※ 일반절차 - 형사소송절차
특별절차 - 통고처분, **즉결심판**

- ① 20만원 이하의
□20만원 이상 [×], 30만원 이하 [×]
- ② 벌금·구류·과료에 상응하는 범죄사건 [O]
□과태료 [×]
- ③ 형의 집행 : 경찰서장 ← 법원 [×]
- ④ A :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[O]
- ⑤ 즉결심판은 행정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도 모두 적용 [O]
□즉결심판은 행정형벌만의 특별한 과벌절차이다. [×]

180 법령에 의한 과태료 - 원칙 [일반적인절차]

□특징 > 간이·신속, 직권주의
□금전채권 [O] →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 [O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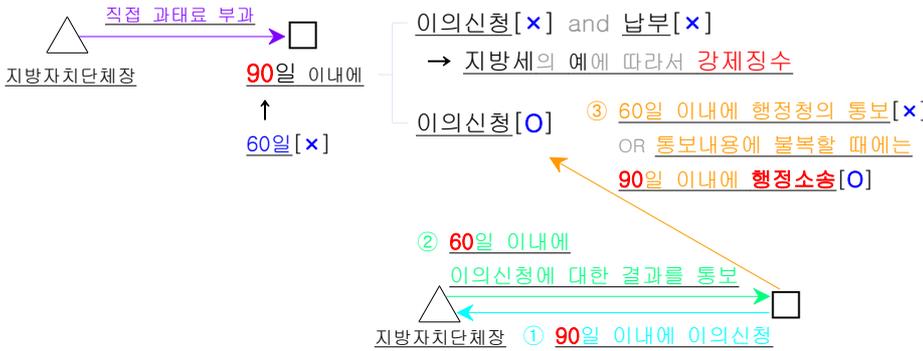
판례 > ① 과태료 : 형벌 [×] → 공소시효의 적용 [×]
② 과태료처벌권 : 금전채권 [×] →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 [×]
③ 과태료부과결정 후 징수의 시효 = 과태료재판의 효력
□금전채권 [O] →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 [O]

181 법령에 의한 과태료 - 예외 [최근의 추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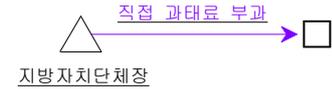
□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 [×]
□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

182 **조례에 의한 과태료 - 지방자치법 §139**

□사기·강박 →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→ 면탈 → 5배 이내의 과태료
 □공공시설 → 부정사용 → 50만원이하의 과태료



※ 지방자치법 §27
 □조례위반 →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 □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[X]



□법령에 의한 과태료
 최근의 추세와 같다.

183 (082) **금전적 제재 - 과징금**

- ① 법적성질 > 급부하명 → 행정행위
- ② 부과주체 > 행정청 [O] ← 법원 [X]
- ③ 구제수단 > 행정소송 [O] ← 비송사건절차법 [X]
- ④ 법적근거 > 필요 [O] → 일반법 [X], 개별법률 [O] (→)
- ⑤ 병과여부 > 과징금은 행정벌과 병과 [O]
- ⑥ 종류 > 전형적 과징금 :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(← 최초로 과징금을 규정)
 변형된 과징금 : 영업정지에 같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
- ⑦ 판례 > cf >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헌법위반이 아니다.
 - ㉠ 초과과징금부과 → 전부 위법 → 전체취소 ← 초과부분만 취소 [X]
 - ㉡ 사자의 과징금부과 →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 [O]
 - ㉢ 장의자자동차운송사업구역 → 제3자의 인용재결 [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.]에 대해 취소소송의 제기 → 반사적 이익 [O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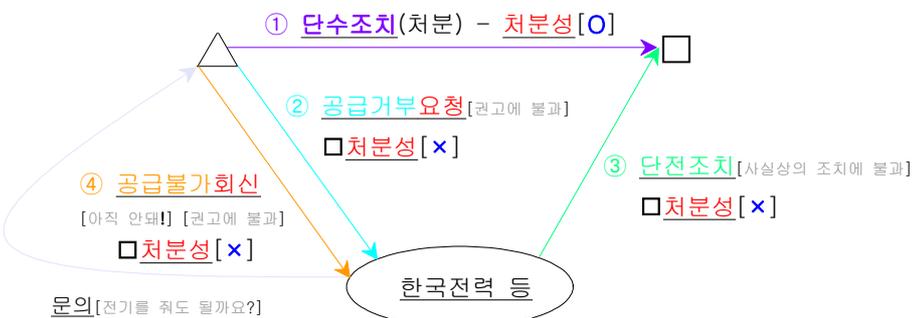
□ **대도자석 주가독식**

- ※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
- ① 대기환경보전법
 - ② 도시가스사업법
 - ③ 자동차운수사업법
 - ④ 석유사업법
 - ⑤ 주차장법
 - 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
 -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 - ⑧ 식품위생법
- ※ 과징금 규정이 없는 법
- 건축법, 주민등록법

□과징금(=부과금), 가산금(이자), 불응이득제, 가산세 [세법상 신고 등의 의무위반]
 □가산세 관련 판례 > 행정질서법
 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.
 ②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.
 □가산금은 행정상 금전급부 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,
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.

184 **비금전적 제재 - 공급거부 [처분성여부]**

□행정청이 재화·서비스의 공급을 중단·거부하는 것(ex> 물, 전기, 도시가스)
 □부당결부금지의 원칙·비례의 원칙에 위반



□대법원은 단수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. [X] ← 없다

185	비금전적 제재 - 공표와 관허사업의 제한
<p>※ 공표 □(다수설) 처분성[×]</p> <p>① 법적성질 > <u>비권력적 사실행위</u> [○] but <u>법적근거</u> [○]</p> <p>② <u>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</u> : 국세청훈령 → <u>국세기본법</u></p> <p>③ 법원의 엄격한 기준 적용 : 국가·지자체 > 언론</p> <p>※ 관허사업의 제한</p> <p>① <u>부당결부금지</u>의 원칙·<u>비례</u>의 원칙에 <u>위반</u> (← <u>공급거부도</u>)</p> <p>② <u>국세징수법</u> : 세무서장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주무관서의 장에게 의무자의 영업을 취소·철회·정지를 요청 할 수 있다. 주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

186 (083)	국세“징수”법 VS 국세“기본”법	□ 귀신고삐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국세징수법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국세귀(기)본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① <u>강제징수의 일반법</u> ② <u>관허사업의 제한</u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① <u>신뢰보호의 원칙</u>(= 행정선례법) ② <u>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</u> ③ 강제징수의 별(불)복절차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국세징수법	국세 귀(기)본법	① <u>강제징수의 일반법</u> ② <u>관허사업의 제한</u>	① <u>신뢰보호의 원칙</u> (= 행정선례법) ② <u>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</u> ③ 강제징수의 별(불)복절차
국세징수법	국세 귀(기)본법					
① <u>강제징수의 일반법</u> ② <u>관허사업의 제한</u>	① <u>신뢰보호의 원칙</u> (= 행정선례법) ② <u>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</u> ③ 강제징수의 별(불)복절차					

187	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비교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</th> <th style="width: 35%; text-align: center;">국민권익위원회</th> <th style="width: 35%; text-align: center;">시민고충처리위원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설치</td> <td>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← <u>대통령</u> [×]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. <u>임의적</u> [×], <u>필요적</u> [○] ↑</td> <td>각 <u>지방자치단체</u>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임의적</u> [○] ↑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성</td> <td>총 15인 - 위원장 1인 - 부위원장 3인 - 상임위원 3인 - 비상임위원 8인</td> <td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로 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원의 임기</td> <td><u>3년</u>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</td> <td><u>4년</u> 연임이 불가능하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사의 의뢰</td> <td><u>감사원</u></td> <td>당해 <u>지방자치단체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국민권익위원회	시민고충처리위원회	설치	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← <u>대통령</u> [×]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. <u>임의적</u> [×], <u>필요적</u> [○] ↑	각 <u>지방자치단체</u> 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임의적</u> [○] ↑	구성	총 15인 - 위원장 1인 - 부위원장 3인 - 상임위원 3인 - 비상임위원 8인	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 로 정한다.	위원의 임기	<u>3년</u>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	<u>4년</u> 연임이 불가능하다.	감사의 의뢰	<u>감사원</u>	당해 <u>지방자치단체</u>
	국민권익위원회	시민고충처리위원회														
설치	<u>국무총리</u> 소속으로 ← <u>대통령</u> [×]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. <u>임의적</u> [×], <u>필요적</u> [○] ↑	각 <u>지방자치단체</u> 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u>임의적</u> [○] ↑														
구성	총 15인 - 위원장 1인 - 부위원장 3인 - 상임위원 3인 - 비상임위원 8인	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 로 정한다.														
위원의 임기	<u>3년</u>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	<u>4년</u> 연임이 불가능하다.														
감사의 의뢰	<u>감사원</u>	당해 <u>지방자치단체</u>														

188 (084) **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**

□ 광의의 공무원(통설·판례) → 판례 > 교통할아버지 - 공무원 [O]

공무원이 ←

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

고의 또는 과실로 ← 중과실 [x]

법령에 위반하여 (위법)

타인에게 **손해**를 발생시킬 것

인과관계(위법한 직무와 손해 간에)

< 공무원이 아닌 자 >

① 의용소방대원

② 시영버스운전사

③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자

④ 단순노무자

< 국가배상법 제2조 >> 성립요건 >

·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

고의 또는 과실로

법령에 위반하여(위법)

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

□ **공직 고과법 손인**

189 (085) **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- 직무**

① 직무의 범위

□ 통설·판례 > 광의설(권력작용+관리작용) ← 국고작용 [x]

② 직무의 내용

□ 행정작용·입법작용·사법작용 모두 포함 [O]

□ 권력행위·비권력행위, 작위·부작위, 법적행위·사실행위 불문!

cf > 국고작용(사경제작용) [x], 통치행위 [x]

③ 직무의 관련성

□ 통설·판례 > 외형설

□ 공무원이 **정당한 권한**을 갖고 있는지?

□ 공무원이 **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**여부가 있었는지?

□ 공무원의 **직무집행의사**여부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**불문!**

□ **권작법**

< 부대이탈 후 민간인 사살 >

① 손해배상책임 [O]

①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행위

② 손해배상책임 [x]

①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군인이 과도·나일론 끈 등을 절취한 다음 탈영하여 강도살인을 한 경우

② 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방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

190 **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- 고의·과실·법령·손해·인과관계**

※ **고의·과실**

① 과실의 객관화 경향

□ 통설·판례 > 추상적 과실(평균적 공무원) ↔ cf > 구체적 과실(당해 공무원)

② 입증책임의 완화

□ 입증 추정법리 : 원고가 기본적인 것만 입증하면 입증책임이 피고적으로 넘어감

※ **타인에게 손해**를 발생시킬 것

① 타인 : 가해자 이외의 모든 **사람**(자연인[공무원] + 법인[국가·지자체])

② 손해 : **법률상 이익의 침해** [O] ← 반사적 이익의 침해 [x]

□ 재산적 손해·비재산적 손해 [위자료] (생명·신체) **불문!**

□ cf > 행정상 손실보상 - 비재산적 손해 [x]

□ 적극적 손해·소극적 손해 (=예지이익, 기대이익) **불문!**

※ **법령에 위반하여**

□ 통설·판례 > 광의설

□ 성문법+불문법+객관적 정당성

↓

인권존중·공서양속

cf > 국가배상법 §2의 위법

▽

취소소송의 위법

※ **인과관계**

□ 상당인과관계

194	공동불법행위자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<p>□ 교통사고 : 부진정 연대책임(의사의 공동[×]) ← cf> 공동불법행위 : 연대책임 □ A(군인) + C(민간인) -[1억원의 손해]-> B(군인) □ 부진정 연대책임 : B는 A or C에게 1억원을 청구 □ 일반책임 : B는 A or C에게 자기 과실비율인 5천만원만 청구</p> <p>※ 부진정 연대책임에 의해서 C(민간인)는 B(군인)에게 1억원을 주고 다시 C(민간인)는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? ① 종래의 대법원 판례>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→ 구상권을 행사[×] ② 헌법재판소>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→ 한정위헌 ③ 최근의 대법원 판례> 부진정 연대책임의 법리를 부정 → 일반책임 즉 C(민간인)는 자기 과실비율인 5천만원만 주면 책임이 면탈됨 → 구상권을 행사[×]</p>	

195	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(흠)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※ 하자인정의 범위 □ 주관설 < 객관설 < 절충설 □ 판례> □ 종래 - 객관설의 입장 □ 최근 -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한 판례도 있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※ 강학상 "공물" : 인공공물(자연공물, 공용물(공용물), 동산(동산))</p> <p>· 공공영조물 - 인공공물(도로), 자연공물(하천), 동산, 동물, 지하케이블선의 맨홀,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, 공중변소, 국립병원, 국립학교교사, 경찰마, 하수도, 관광서청사, 소방자동차, 군견, 경찰견, 자동차</p> <p>· 공공영조물[×] : 잡종재산(국유림[잡종임야], 국유미개간지, 폐차처분한 관용차, 국유임야)</p> </div>	

<p>□ 공물 : 물적요소 (← 행정주체[×]) ex> 인공공물(도로, 공원, 신호등, 맨홀, 공중변소, 가로수), 자연공물(하천, 호수) 공용물(관공서의 청사), 공공용물(인공공물), 국립도서관 건물, 서울대학교 건물</p> <p>□ 영조물 : 물적요소 + 인적요소 (← 행정주체[×]) ex> 국립도서관, 서울대학교(각종 국·공립학교) 박물관, 유치원, 고아원, 양로원, 탁아소</p> <p>□ 영조물법인 : 물적요소 + 인적요소 + 법인격 (← 행정주체[O]) ex> 서울대 병원(국·공립대학의 부속병원), 적십자병원, 과학기술원 각종 공사(공단)(한국도로공사, 한국관광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기술경영공단) 각종 국책은행(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)</p>	
---	--

196	국가배상법 제5조의 면책사유
<p>□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</p> <p>① 불가항력[O] : 과학적으로 예측[×], 인력으로 막아 낼 수[×] □ 판례> ㉠ 쇠파이프 사건 ㉡ 600년~1000년의 강우량</p> <p>② 예산부족 : 원칙적으로 면책사유[×] □ 판례> 참작사유[O], 절대적 요건[×]</p>	

197

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

※ 헌법재판소>

- ① 필요적 결정전치주의 → 합헌판결
□[입법자의 개정]→ 임의적 결정전치주의
- ② (구) 국가배상법 §16 :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→ 재판상 화해[확정판결과 같다]로 본다. → 위헌결정

198

헌법 제23조(재산권 보장과 제한)

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- 헌법 제23조 제3항

-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한다.
-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□ : 재산권행사는 사회적 구속(제약)이 있음!

-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

직접적 침해↑	↑간접적 침해
사용권인정[x]	사용권인정[x]
소유권인정[x]	소유권인정[O]
(공행정 목적을 위한) 공용침해	

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**정당한 보상**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99 (087)

헌법 제23조에서의 “실질적 기준설”

□헌법 제23조 제□항제②항(사회적 제약[보상[x]])의 경계를 넘어 왔느냐? 안 넘어 왔느냐? ← 넘어 왔으면 : ③항(특별한 희생[보상[O]])

✓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 여부

- ① 목적위배설 - 종래의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공익목적에 위하여 과해진 침해행위(특별한 희생)
- ② 사적 효용설 - 재산권의 사적 효용성을 침해하는 행위(특별한 희생)
- ③ 중대설 - 재산권 침해의 범위와 중대성 → 수인할 수 없으면 → 특별한 희생
- ④ 보호가치설 - 보호가치 있는 재산권의 침해(특별한 희생)
- ⑤ 상황구속성설 - 토지 등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↓ 좀처럼 특별한 희생이 안 된다. 수도권(문화재보호구역)에 인접 → 사회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.
- ⑥ 수인한도설 - 재산권의 본질(배타적 지배성)을 침해하면 수인한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된다.

□ 목사중 보상수

- ① 목적위배설(포르스트호프)
- ② 사적 효용설(라인하르트)
- ③ 중대설(독일의 연방행정법원,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[x])
- ④ 보호가치설(엘리네크)
- ⑤ 상황구속성설(독일의 판례)
- ⑥ 수인한도설(슈퇴터·마운츠)

- 재산권의 존속보장(원칙) : 항고소송 → 방어하라! 불연이면 청산하라!
- 재산권의 가치보장 : 손실보상 → 참아라! 그리고 청산하라!

200 (088) 행정상 손실보상 - 사회적 제약? 특별한 희생? 과 관련된 학설

미완의 대기!

- ※ 통설 > 절충설(복수기준설 = 형식적 기준설 + 실질적 기준설) ← case by case
- ※ 판례 > 대법원 -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→ 사회적 제약 [O] → 보상 [X]
- ②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제한 → 사회적 제약 [O] → 보상 [X]

헌법재판소

- ① 개발가능성의 감소, 토지가격의 하락, 지가상승률의 하락 → 사회적 제약 [O] → if > 법률에 보상규정 [X] → 합헌
- ② 나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→ 특별한 희생 [O] → if > 법률에 보상규정 [X] → 위헌
- ③ 토지의 종래 사용목적에 침해 → 특별한 희생 [O] → if > 법률에 보상규정 [X] → 위헌

※ 형식적 기준설

- 개별적(특정인) → 특별한 희생 [O] → 보상 [O]
- 일반적(불특정 다수인) → 사회적 제약 [O] → 보상 [X]

※ 실질적 기준설

□ 목사증 보상수

※ 손실보상의 보상기준 : 정당한 보상

- 미국 : 완전보상설(다수설·판례)
- 독일 : 상당보상설

201 (089)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 효력

방위유지

□ 개별법에 보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그 상위법인 헌법 제23조 3항을 적용하여 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?

- ① 방청규정설 → 헌법 제23조 3항은 프로그램적 규정(방청규정, 선언적 규정)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. 개별법들에 보상의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보상은 받을 수 없다. 일반적 견해 [X]
- ② 위헌무효설(입법자구속설/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) ← 다수설 :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 → 위헌인 법률 → 무효 → 위헌(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→ 위법 → 손해배상 [O])
- ③ 유추적용설(간접적용설) : 법률에 보상규정 [X] → (헌법 제23조 제3항+관련 보상규정이 있는 법률)의 유추적용 → 손실보상 [O]
- ④ 지(직)접효력설(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) → 헌법 제23조 3항도 일반적·추상적 규범이므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→ 손실보상 [O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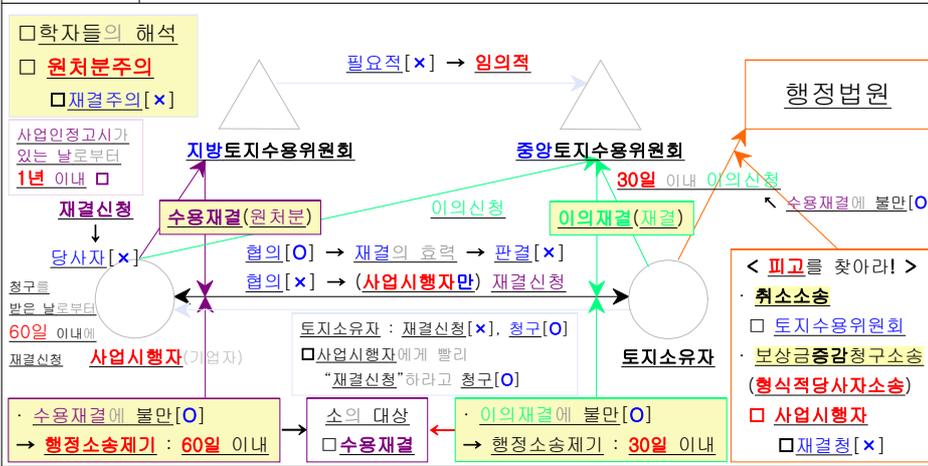
- 대법원 :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경향
- 헌법재판소 : 명확하게 분리이론에 입각한 위헌무효설
- 독일(통설, 판례) : 수용유사침해(이론) □ 법률에 보상의 규정 [O] → 보상 [O] → 수용침해 → 손실보상 □ 법률에 보상의 규정 [X] → 수용유사침해 (침해의 근거 [O])

- ※ 방청규정설 : 법률에 보상의 근거 [X] →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[X] → 손실보상 [X]
- 위헌무효설 : 법률에 보상의 근거 [X] → 손실보상 [X] + 손해배상 [O]
- 유추적용설 : 법률에 보상의 근거 [X] →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유추적용 [O] → 손실보상 [O]
- 직접효력설 : 법률에 보상의 근거 [X] →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[O] → 손실보상 [O]

202 손실보상의 요건

- ① 적법한 공권적 침해 (↔ 손해배상과 구별[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전제]) 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 [X]
- ② 적법한 침해 (→ 침해의 유형? 수용, 사용, 제한)
- ③ (그 침해는) 공공필요에 의한 (의할 것)
- ④ 재산적 법익으로 한정 (→ 헌법에서 비재산적 법익(생명·신체 등에 대한 침해) [X]) □ 보원 > 희생보상청구권
- ⑤ (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) 특별한 희생(까지 갔을 것) ↔ 사회적 제약(구속)
- ⑥ 보상의 근거규정을 갖고 있어야 함. → if > 보상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이 침해는 수용유사적침해라 함. → 6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면 개인적 공권으로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함. (“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돈 달리!”라고 청구 할 수 있다.) → if > 개인적 공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(거부·부작위하면) 행정소송법에 의해서(소송절차를 통해서) 이 권리행사는 보장 될 것임.

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

□ 종전의 토지수용법하에서의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불복으로 제기하는 손실보상금의 증감청구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본다. [X]

□ 공법상 당사자소송

□ 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음

207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도표



208 수용유사적 침해 vs 수용적 침해 vs 손실보상

수용유사적 침해	수용적 침해	손실보상
위법(헌법)·무책	적법·무책(결과책임)	적법·무책
보상의 근거규정 [X]		보상의 근거규정 [O]
시작 할 때부터 보상을 요하는 침해	시작 할 때는 보상을 요하는 침해가 아니었다가(사회적 제약) 나중에 "비전형적"이고 "비의도적"으로 보상을 요하는 침해(특별한 희생)로 바뀐 경우	

※ 손해배상

□ 위법(법률)·무책

어쩌다 보니까, 생각지도 않게, 뜻하지 않게, 비의도적으로, 비의도적으로, 비전형적으로, 비유형적으로, 결과적으로 장기간 경과하다 보니까 책임진다.

209	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- 1	
	수용 침해(손실보상)	수용유사 침해 (← 경계이론과 관련)
의의 요건	① 공공필요에 의해서 ② 적법한 공권력 행사 ③ 의도된 "재산권" 침해 ④ 특별한 희생	① 공공필요에 의해서 ② 위법한 공권력 행사 (← 보상규정 [×]) ③ 재산권 침해 ④ 특별한 희생
근거	독일 헌법 §14 ③	· 초기 : 독일 헌법 §14 ③ · 자갈채취판결 이후 → 관습법 (프로이센 일반관트법, 희생보상청구권)
우리 나라	헌법 §23 ③	· 학설 : 방 위 유지 ← 유추적용설 · 판례 : 거론한 판례 [O] 명시적 태도 유보("문화방송주식사건")

- ※ **재산권** ← **손실보상**
- 생명·신체 등 **비재산적 이익** [×]
 - 재산적 이익(**재산권**) [O]
 - **공법상 권리·사법상 권리** **불문!**
 - **물권** [토지소유권·전세권]·**채권** **불문!**
 - **판례** > **재산권에 포함** [×]
 - ① **현재가치가 없는 기대이익**
ex> **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**
 - ② **문화적·학술적 가치**

210	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- 2					
	수용적 침해	희생보상청구권				
의의 요건	① 공공필요에 의해서 ② 적법한 공권력 행사 ③ 의도되지 않은 재산권 침해 (= 비정형적) ④ 특별한 희생 ex> 지하철공사, 도로공사	① 공공필요에 의해서 ② 적법한 공권력 행사 ③ 생명·신체 등 비재산권 침해 ④ 특별한 희생 ex> 예방주사, 경찰관이 적법하게 발사한 총탄이 아스팔트에 튀겨 지나가는 행인을 숨지게 한 사건				
근거	· 관습법	· 관습법 (프로이센 일반관트법, 희생보상청구권)				
우리 나라	· 학설 : 견해대립 있음 · 판례 : 거론한 판례 [×]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 일반법 [×] 개별법률 [O] 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 개별법률 [×] </td> </tr> <tr> <td> 전염병예방법 소방기본법 </td> <td> · 학설 : 인정(← 다수설) · 판례 : 거론한 판례 [×] </td> </tr> </table>	일반법 [×] 개별법률 [O]	개별법률 [×]	전염병예방법 소방기본법	· 학설 : 인정(← 다수설) · 판례 : 거론한 판례 [×]
일반법 [×] 개별법률 [O]	개별법률 [×]					
전염병예방법 소방기본법	· 학설 : 인정(← 다수설) · 판례 : 거론한 판례 [×]					

211 (093)	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	
① 공행정 작용 으로 인해서 ↔ 사경제작용 [×] □ 권력작용· 비권력 작용, 작위·부작위(다수설), 법적 행위· 사실 행위 불문!		
② 법률상 이익 이 침해되고 ↔ 반사적 이익 [×], 사실상 이익 [×] □ 재산상 이익, 생명·신체·명예 등 비재산상 이익 불문! □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 [O] ↔ 보호가치 없는 이익의 침해 [×] - 불법주차		
③ 위법한 상태 가 계속 되고 ← 현재 위법상태의 결과 □ 과거의 위법·적법 은 묻지 않음 → 가해 공무원의 고의·과실 은 요건이 아님		
④ (행정청의) 기대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.(법률상·사실상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) □ 판례 >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 무단으로 매설한 상수도관 → 기대가능성 [O]		
□ 법적성질 > 물권적 청구권보다 더 포괄적 권리 (다수설) ← 생명·신체·명예 □ 채권적 청구권 [×]		
□ 구제 > 공권 : 당사자소송(다수설), 사권 : 민사소송(소송실무) → 항고소송 [×] □ 손해배상청구권 vs 결과제거청구권 : 배타적 [×], 경합적 [O]		
	손해배상청구권	결과제거청구권
요건	공무원의 고의·과실 [O]	공무원의 고의·과실 [×]
효과	금전배상	원상회복
□ 공행정 작용 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. [O]		

□ **공법위기**

212 **취소심판의 체계**

청구요건

□ 6가지

·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

□ 각하

→ **본안(심사)**

□ 행정처분의
위법 + 부당 여부를 심사

재결

□ 기각재결

□ 인용재결

① 대상적격 (= 처분성) ② 청구인적격 - 법률상 이익 [권해대립 있음]

③ 피청구인적격 [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] ④ 청구기간 (제기기간)

⑤ 서면 ← 구술 [×] ⑥ 행정심판위원회

□ 다수설 > 입법상 비과오설

- ① 대상적격 - 위법 + 부당한 처분
 - 행정심판법에서 명문으로 제외시킨 것
 - 대통령의 처분·부작위
 - 재심판청구의 금지 [기관력이 발생 [×]]
- ⑤ 서면 - 행정심판의 청구
 - cf > 본안심사 - 심리의 원칙
 - 구술심리주의 또는 서면심리주의
 - 서면심리주의를 더 강조함
 - 비공개주의 (명문의 규정 [×])
 - ↑ 학자들의 해석에 의해 □
- ⑥ 행정심판위원회 - 처국광 3위

213 행정심판법상에 명문의 규정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된 것

- ①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
 - 행정심판제기 [×], 행정소송제기 [○]
- ② 재심판청구금지
 -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. [○]
 - 특별한 규정 >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청 → 행정심판제기 [○]

214 **④ 행정심판의 청구기간**

□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- 불변기간 [○]

□ 예외 > 불가항력적 사유(천재지변·전쟁)가 소멸한 날로부터(국내 [14일], 국외 [30일])

- 행정소송법 > 명문의 규정 [×] ← 행정소송법 §8 ②
- 민사소송법 > 명문의 규정 [○] ↑

□ 판례 > 처분 등을 현실적으로 안 날 - 처분의 구체적 내용·위법여부 등을 알 필요 [×]

처분 등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

- 생활권 범위에 떨어진 경우 ✓ 법률상 추정 [×], 본증 [×]
- "현실적으로 알았다." 라고 추정(사실상 추정 → "반증"으로 깨질 수 있다.)

□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- 불변기간 [×], 가변기간 [○], cf > 행정소송(1년)

□ 예외 >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난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- ex >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

□ 판례 >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→ 도달주의 →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

□ "청구기간"의 적용범위

- ① 취소심판 : 적용 [○]
- ② 무효등확인심판 : 준용규정 [×] ← 명문의 규정 [○]
- ③ 의무이행심판 - 거부처분 : 준용규정 [○]
- 부작위 : 준용규정 [×] ←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

- 행정소송에 있어서 "제소기간"의 적용범위
- ① 취소소송 : 적용 [○]
 - ② 무효등확인소송 : 준용규정 [×]
 -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: 준용규정 [○]
 - 행정심판 [○] → 행정소송 [○]
 -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: 90일
 - 송달 [×],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: 1년
 - 행정심판 [×] → 행정소송 [○]
 -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
 - ④ 당사자소송 : 준용규정 [×]

215	④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관련된 판례
<p>1. 처분이 있음을 안 날 → 통지·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격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: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② 공시송달의 경우 :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 ③ 사실행위의 경우 : 사실행위의 계속적 상태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날 ④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: 납부의무자는 그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. ⑤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: 납부의무자는 그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되지는 아니한다. <p>2. 처분이 있는 날 → 처분이 고지 등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</p>	

216 (094)	⑥ 예외적인 “행정심판위원회”
<p>※ 원칙 : 직근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← 최상급 [×]</p> <p>※ 예외 : 처국광 3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④ 제3의 기관 ⑤ 위임 · 위탁 	

□ 처국광 3위

217	⑥ 처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(국정원장, 감사원장, 대통령실장)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국회사무총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법원행정처장 ③ 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: 국회의장, 헌법재판소장, 대법원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소청심사위원회, 노동위원회 	

218 (095)	⑥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
<p>① 국무총리,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</p> <p>②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감독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(처장, 청장) □ 법제처장, 국가보훈처장, 경찰청장, 병무청장</p> <p>③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 : 지방경찰청장, 지방병무청장 경찰서장, 병무지청장</p> <p>④ 광역자치단체장 :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교육감</p>	

□ **특광도 제교**

219	⑥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제3의 기관
<p>※ 광역자치단체장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제주특별자치도지사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↑[O]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<자치구>) ↑[×] 구·읍·면·동</p> <p>※ 제3의 기관</p> <p>□ 공무원의 징계처분 : 행정심판위원회 > 소청심사위원회(국가공무원법)</p> <p>□ 국세·관세 : 행정심판위원회 > 조세심판원(국세기본법)</p> <p>□ 행정심판법 [×], 개별법률에 규정 [O]</p>	

220	⑥ 위임/ 위탁
<p>※ 위임</p> <p>권한을 위임함 ↓ 위임청 ↓ 수임청 → A</p> <p>· 취소심판제기 □ 행정심판위원회 > : 위임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</p> <p>· 취소소송제기 □ 피고 > : 수임청</p> <p>※ 위탁(동등한 기관)</p> <p>위탁기관 → 위탁 → 수탁기관 → A</p> <p>환경부장관 → 위탁 → 행정안전부장관(행심위) > 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)</p> <p>· 원칙 : 행심위 > 직근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</p> <p>· 예외 : 행심위 > 처국광 3위</p>	

221	⑥ 행정심판위원회(합의제 행정청)	
	일반행정심판위원회	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
설치	직급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	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
구성	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	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
위원장	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→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이 직무대행 [O]	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인 → 법제처장 [×] →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[O]
위원	[×]	· 상임위원 : 위원 중 2인 이내 · 비상임위원 :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
회의	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 으로 구성 외부전문가(민간인위원)는 4인 이상	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 으로 구성 외부전문가(민간인위원)는 5인 이상

222	행정심판에서 “집행정지”와 “사정재결”의 적용범위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집행정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정재결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고심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소심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O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O]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효등확인심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O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×]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무이행심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×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O]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mall>당사자심판</small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×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×]</td> </tr> </table>			집행정지	사정재결	항고심판	취소심판	[O]	[O]	무효등확인심판	[O]	[×]	의무이행심판	[×]	[O]		<small>당사자심판</small>	[×]	[×]
		집행정지	사정재결																	
항고심판	취소심판	[O]	[O]																	
	무효등확인심판	[O]	[×]																	
	의무이행심판	[×]	[O]																	
	<small>당사자심판</small>	[×]	[×]																	
ii. 권익구제방법		✓ 행정심판법 : 상당한 구제방법																		
□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익구제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. [×] □ 행정소송법																				
□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고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 [×] □ 사정재결																				

223	행정심판법 - 재결 - 1	
① 재결의 종류		
㉠ 청구요건 → 각하재결		
㉡ 본안 → 기각재결(사정재결)		
인용재결		
취소심판		
형성재결[↓]		
□ 처분취소재결, 처분변경재결		
이행재결[✓]		
□ 처분취소명령재결, 처분변경명령재결		
무효등확인심판 - 처분유효확인재결, 처분무효확인재결		
처분존재확인재결, 처분부존재확인재결		
처분실효확인재결(명문의 규정[×], 가능[O])		
의무이행심판		
형성재결[↓] : 처분재결		
이행재결[✓] : 처분명령재결		
② 사정재결		
㉠ 위원회는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 을 명시하여야 한다.		
㉡ “ 상당한 ” 구제방법		
㉢ 의무이행심판 - 준용규정 [O]		

224 (096)	행정심판법 - 재결 - 2
<p>③ 재결기간 -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30일[×]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(훈시규정)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cf> 고지제도(강행규정)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 ← 30일 범위내에서[○] ↑ 위원회[×] ↑ 30일만[×], 1차에 한하여[×]</p> <p>④ 재결의 방식 : 서면 ← “구술에 의하는 재결 → 위법 → 무효”</p> <p>⑤ 재결의 범위 ㉠ 불고불리의 원칙 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</p> <p>⑥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-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이 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 ← 피청구인[×]</p>	

□ **재혼이!**

- ※ 심판**청구**의 방식 : **서면**
- ※ **심리**의 방식
 - ① **직권심리주의**
 -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.
 - ② **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**
 당사자가 **구술심리**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**외에는**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.
- ※ **재결**의 방식 : **서면**

225	행정심판법 - 재결 - 3
<p>⑦ 재결의 기속력 ← 기속력만 명문의 규정[○] 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. 판례>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!</p> <p>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(시정명령권)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.(직접처분권) → 행정심판법(간접강제제도[×])</p>	

226	행정심판법 - 재결 - 4
<p>⑧ 재결의 효력 - 확인행위(준사법적 행정행위) ㉠ 준사법적 작용 → 불가변력 → 형성력 → 인용재결, 형성재결에서만 발생함 → 기속력(명문의 규정[○]) → 인용재결, 형성재결, 이행재결에서 모두 발생함</p> <p>㉡ 행정행위 → 불가쟁력, 공정력</p> <p>판례> 재결청으로부터 ‘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.’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 → 사실의 통지에 불과 → 행정처분[×]</p>	

<p>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→ 재결도 소의 대상[○] → 취소소송을 제기[○](행정소송법§19)</p> <p>⑩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→ 다수설·판례> 기각설 ← 각하설[×]</p>	
--	--

227	고지제도	
	직권에 의한 고지	청구에 의한 고지
주체와 상대방	· 주체 : 행정청 ↓ 이해관계인[×] · 상대방 : 처분의 직접 상대방	· 청구권자 : 이해관계인
대상	“서면”에 의한 처분 □구술에 의한 처분[×], 국고작용[×] □수익적 행정행위[×]	모든 처분
방법 시기	명문의 규정[×] 통설> 서면, 처분시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됨	서면이나 구술 □반드시 서면 이어야 한다.[×]
□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등 다른 개별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포함된다.(← 통설)		

- 성질> 비권력적 사실행위 → 처분성[×] → 행정심판·행정소송의 대상[×]
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의 규정은 강행규정(의무규정)설 (← 다수설)
- 효과> · 원칙>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.
 · 불고지 -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.
 · 오고지 -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!
 ex> “90일 → 900일”로 잘 못 고지하면 90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.

228	고지제도 [O][×]	
<p>① 고지제도는 처분청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알려 줌으로써 행정구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으며,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.[O]</p> <p>② 직권고지의 대상인 서면에 의한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 외에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함한다.[O]</p> <p>③ 행정심판법은 직권고지의 상대방으로 당해 처분의 상대방 외에 ✓ 제3자는 제외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도 포함시키고 있다.[×]</p> <p>④ 직권고지의 내용으로서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,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, 청구기간 등이 들어가야 한다.[O]</p> <p>⑤ 이 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능보장과 행정작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, 행정심판법에 의한 직권에 의한 고지는 서면의 형식에 의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 된다.[O]</p> <p>⑥ 청구에 의한 고지의 경우 고지의 청구권자에는 제3자효행정행위에서의 제3자, 처분의 직접 상대방 등이 있다.[O]</p> <p>⑦ 여기에서의 고지행위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기관의 고지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.[×] ← 있다.</p> <p>⑧ 고지의 방식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청구권자가 서면에 의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[O]</p>		

229	취소소송의 체계	
<p>소송요건</p> <p>□ 7가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□ 각하 □ 사실심 변론 종결시 □ 직권조사사할 ① 대상적격 (§19)(= 처분성) ②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(§12) ③ 피고적격 (§13) ④ 제소기간 (§20) 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(§18) ⑥ 소장 (§8 ②) ⑦ 관할법원 (§9) 	<p>본안(심사)</p> <p>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</p> <p>① 심리의 원칙 (§8 ②) ② 집행정지 (§23)</p>	<p>판결</p> <p>□ 기각판결 (원고가 지는 것)</p> <p>□ 인용판결</p> <p>① 사정판결 (§28) ② 판결의 효력</p>

230	취소소송의 “소송요건”	
<p>소송요건</p> <p>□ 7가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□ 각하 □ 사실심 변론 종결시 □ 직권조사사할 	<p>본안(심사)</p> <p>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</p>	<p>판결</p> <p>□ 기각판결 (원고가 지는 것)</p> <p>□ 인용판결</p> <p>⑥ 소장 (§8 ②) ⑦ 관할법원 (§9)</p>
<p>① 대상적격 (§19) (= 처분성)</p> <p>②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(§12)</p> <p>③ 피고적격 (§13)</p> <p>④ 제소기간 (§20)</p> <p>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(§18)</p>		
<p>행정청 (△) → 원고 (○) → 판결</p>		

231 **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1**

□ **주한미군 종도세공조**

1-2. 통치행위 - 처분성 [×]

- ①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
- ② 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

2-1. 공법인의 내부관계 - 처분성 [O] - 공법관계

- ① 농지개발조합 임직원의 근무관계(징계처분) - 항고소송 ← 민사소송 [×]
- ② 재개발조합의 - 관리처분 계획(분양처분계획) - 항고소송
- 조합원 지위확인소송 - 당사자소송

2-2. 공법인의 내부관계 - 처분성 [×] - 사법관계

- ① 주한미군 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
- ②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
- ③ 한국토지신탁
- ④ 세(서)울지하철공사 직원의 징계처분 ← 행정소송 [×], 민사소송 [O]
- 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
- ⑥ 한국조폐공사

232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2
<p>3-1. 사인의 공법행위(신고) - 처분성[O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변형적 신고(수리를 요하는 신고, 행위요건적 신고)</p> <p>① 건축법상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</p> <p>②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</p> <p>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</p> <p>④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</p> <p>3-2. 사인의 공법행위(신고) - 처분성[X]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형적 신고(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, 자기완결적 신고, 자족적 신고)</p> <p>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</p> <p>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</p> <p>③ 공동주택 입주자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에 대한 신고</p>	

233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3
<p>4-1. 내부행위 - 처분성[O]</p> <p>①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</p> <p>② 공무원의 징계처분(궤 감정 해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</p> <p>③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처분(대리)</p> <p>④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← 재결(감사원법은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음)</p> <p>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</p> <p>⑥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결정</p> <p>⑦ 토지취득보상법상 사업인정(특허)</p> <p>⑧ 지방의회의 - 의장선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-left: 100px;"> cf> 국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치행위 → 처분성[X] </div>	

궤 감정 해피

<p>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금결정</p> <p>⑩ 공무원면접시험의 면접불합격결정행위</p> <p>⑪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행한 중재회부결정</p> <p>⑫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</p> <p>⑬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임원에 대한 문책경고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cf>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(상당)을 보낸 행위(사실상의 통지에 불가) → 처분성[X]</p> <p>⑭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</p> <p>⑮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할산처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횡단보도 설치행위</p>	
---	--

234	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4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4-2. **내부행위 - 처분성 [×]**
- ① 건교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
 - ② 공무원에 대한 법정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단순서면경고
 - ③ 성업공사의 공매결정과 공매통지 [한국자산관리공사]
if> 성업공사(위임) - 피고> 성업공사
 - ④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 ← 원처분
 - ⑤ 수입허가기간연장에 관한 행정청간의 협의
 - ⑥ 과세표준결정 / 조세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과세표준결정
 - ⑦ 징계위원회의 결정 /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
 - ⑧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
 - ⑨ 국가유공자가 부상여부 및 정도를 판정받기 위하여 하는 신체검사판정 상이등급 재분류(변경)과정 중에 있는 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

- ⑩ 병역법상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
- ⑪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서
- ⑫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·지시·동의
- 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견
- ⑭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
서울시의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공에 관한 지침
- ⑮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행위
- 재정경제부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
-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결정
- 교육공무원법상 총·학장의 교수 등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
- 수입하려고하는 외국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
- 횡단보도설치 및 존치결정

235	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5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- 5-1. **법률행위적 행정행위 - 처분성 [O]**
- ① 행정기관이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
 - ②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처분
 - ③ 토지수용에서 건교부장관의 사업인정(특허)
 - ④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
 - ⑤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(=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) : 특허(재량행위)
 - ⑥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
 - ⑦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

- 5-2. **법률행위적 행정행위 - 처분성 [×]**
- ① 정부투자기관이 한 부적당한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
 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행한
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
 다수설> 처분성 [O], 판례> 아직 없음
 - ②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행한 택지공급결정
 - ③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증차배정조치
 - ④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등록직권말소행위
 - 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
 - ⑥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

236 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6

- 6-1. 통지 - 처분성 [O]
-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(계고,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등)
 - ①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
- 6-2. 통지 - 처분성 [X]
-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
 - ① 정년퇴직통고
 - ② 공무원의 당연퇴직통보(당연퇴직의 인사발령) ← 통지[X], 사실행위[O]
 - ③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

- ④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장(상당)을 보낸 행위
- ⑤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내역과 이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통지

237 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7

7. 일반적·추상적 규율(행정입법)
- 원칙> 처분성 [X]
 -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
 - 예외> 처분성 [O]
 - ① 두일분교폐지조례
 -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
 - ③ 약제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
 - ④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

238 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8

- 8-1. 특별행정법관계 - 처분성 [O]
- ① 국·공립학교학생의 퇴학·정학처분
 - ② 국립대신입생에 대한 불합격처분
 - ③ 구청장에 의한 동장의 면직처분
 - ④ 재소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이송조치
- 9-1. 확약 - 처분성 [O]
- ① 자동차운송사업양도·양수계약에 기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내인가의 취소행위
 - 판례> 내인가의 취소는 본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.
- 9-2. 확약 - 처분성 [X]
-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

239 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9

10-1. 다단계 행정절차 - 처분성 [O]

- ①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
- ②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

11-1. 공증 - 처분성 [O]

- ①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
- ②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
- ③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 설정등록행위
- ④ (구)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단체등록행위 ← 수리
- ⑤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

11-2. 공증 - 처분성 [X]

- ① 임야대장예의 등재·등재사항 변경행위
- ② 자동차운전면허대장예의 등재행위
- ③ 하천대장예의 등재행위
- ④ 온천관리대장예의 등재행위
- ⑤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등
- ⑥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
- ⑦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

240 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10

12-1. 거부처분 - 처분성 [O]

- 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미수리처분
- ② 검사임용거부처분
- ③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
- ④ 정보제공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
- ⑤ 영업허가갱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
- ⑥ 학력인정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명의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
- ⑦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
- ⑧ 국공립대학의 교수재임용거부처분
- ⑨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

- ⑩ 계획변경청구권(예외)
 -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[농림지역→준도시지역]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
- ⑪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회신
- ⑫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거부행위

241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1
<p>12-2. <u>거부처분</u> - <u>처분성</u> [×]</p> <p>① <u>국·공유 잡종재산</u>의 매각·대부·임대기간연장 요청 등 사경제적 행위의 요청에 대한 <u>거부</u></p> <p>② 제3자의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<u>거부</u></p> <p>③ <u>전통사찰의 등록말소신청</u>의 <u>거부</u></p> <p>④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<u>거부</u></p> <p>⑤ <u>계획변경청구권(원칙)</u> □국도이용계획상의 <u>용도지역변경허가신청</u>에 대한 <u>거부</u></p> <p>⑥ <u>인가된 도시계획사업(도로개설)</u>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<u>거부행위</u></p>	

242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2
<p>13-1. <u>부관</u> - <u>처분성</u> [O] : <u>부담</u></p> <p>13-2. <u>부관</u> - <u>처분성</u> [×] : <u>기타부관</u></p> <p>① <u>조건</u></p> <p>② <u>기한</u></p> <p>③ <u>철회권의 유보</u></p> <p>④ <u>수정부담</u></p> <p>⑤ <u>법률효과의 일부배제</u></p> <p>⑥ <u>부담유보</u></p>	

□ 조기 철수법 유보

243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3
<p>14-1. <u>반복된 행위</u> - <u>처분성</u> [O]</p> <p>① <u>행정대집행법상 1차 계고처분</u></p> <p>② <u>반복된 거부처분</u></p> <p>14-2. <u>반복된 행위</u> - <u>처분성</u> [×]</p> <p>① <u>행정대집행법상 2차·3차 계고처분</u></p> <p>② <u>국세징수법상 2차 독촉</u></p>	

244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4
<p>15-1. <u>국·공유재산</u> - <u>처분성</u> [O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행정재산의 <u>사용허가</u>(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) ② 행정재산의 <u>사용허가</u>에 따른 <u>사용료부과</u>처분 ③ 국유재산법상의 <u>사용료부과</u>처분 ④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<u>변상금부과</u>처분 ⑤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<u>점용료부과</u>처분 ⑥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<u>귀속재산 매각</u>행위 <p>15-2. <u>국·공유재산</u> - <u>처분성</u> [X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잡종재산인 국유림</u>에 관한 <u>대부료의 납입고지</u> ② <u>잡종재산의 사용료</u>납입고지 	

245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5
<p>16-1. <u>행정계획</u> - <u>처분성</u> [O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시<u>관리</u>계획결정 ② <u>한지예정지 지정/ 한지처분</u> [한지계획→한지예정지 지정→한지처분] ③ (구) 도시재개발법상 <u>관리</u>처분계획 ④ <u>고시된 도시</u>계획결정 <p>16-2. <u>행정계획</u> - <u>처분성</u> [X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구) 도시계획법상 도시<u>기본</u>계획 ② 도시개발법상 <u>한지계획</u> [한지계획→한지예정지 지정→한지처분] ③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<u>기본</u>계획 ④ (구) 농·어촌도로정비법상 농·어촌도로<u>기본</u>계획 	

246	① <u>대상적격(처분성)</u> - 16
<p>17-1. <u>사실행위</u> - <u>처분성</u> [O]</p> <p>< 권력적 사실행위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교도소장</u>의 <u>이송조치명령</u> <p>17-2. <u>사실행위</u> - <u>처분성</u> [X]</p> <p>< 비권력적 사실행위 : 행정지도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영업시간</u>준수촉구 ② <u>행정기관</u>이 상대방 개인에 행하는 <u>알선·권유</u> ③ <u>세무당국</u>이 <u>특정회사</u>와의 <u>주류거래</u>를 <u>중지</u>하여 달라고 한 <u>요청</u> <p>② <u>재결주의</u>로 판시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<u>노동위원회</u>법상 <u>중앙노동위원회</u>의 <u>재심판정</u> ㉡ (구) <u>통(토)지수용법</u>상 <u>중앙토지수용위원회</u>의 <u>이의재결</u> ㉢ <u>감사원</u>법상 <u>감사원</u>의 <u>재심의판정</u> ㉣ <u>독(특)허법</u>상 <u>특허심판원</u>의 <u>심결</u> 	

□ 노통감독

250	① 대상적격(처분성) - 20
<p>22. 기타</p> <p>① 청원 : 행정청의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처분[×]</p> <p>② 손해배상 :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처분성[×]</p> <p>※ 주의 :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.</p> <p>③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처분성[×]</p> <p>④ 정보통신부장관의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하는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은 처분성[×]</p> <p>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입지기준확인은 처분성[×]</p>	

251 (097)	② 법률상 이익의 의미 - 원고적격
<p>① 권리구제설(권리회복설) □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[O]</p> <p>② 법률상 (보호되는) 이익구제설(통설·판례) □ 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계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사익(개인의 이익)을 침해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[O]</p> <p>③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□ 실체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쟁송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가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[O]</p> <p>④ 적법성 보장설 □ 소를 제기할 적법한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[O]</p>	

□ **권법보적**

252 ₍₄₄₋₁₎	② 원고적격을 “인정”한 판례
<p>① 인근주민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</p> <p>② 인근주민의 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처분의 취소</p> <p>③ 공설화장장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</p> <p>④ 인근주민의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</p> <p>⑤ 부지사전송인처분사건</p> <p>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(내)의 주민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</p> <p>⑦ 기존업자의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의 취소</p> <p>⑧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의 취소</p> <p>⑨ 이전지역에 있는 기존 약종상업자의 약종상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 ← (허가)</p> <p>⑩ 기존업자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</p> <p>⑪ 기존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</p> <p>⑫ 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.</p> <p>⑬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으로 기존주유소업자가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. (다수설 - 허가)</p>	

< 제3자에게 **법률상 이익**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>

- **환경법상 환경권** 등의 **침해**가 있는 경우
 - 인근주민의 **연탄공장설치허가취소청구**
 - 인근주민의 **자동차 LPG충전소설치허가취소청구**
 - **공설화장장설치**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**부근주민들의 이익**
- **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**의 주민인 경우
 - **법률상 이익**[O]
 -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**의 주민인 경우
 - **법률상 이익**[×]
- **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취소소송**에서 **폐기물처리법상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**이라 하더라도 **법률상 이익**이 인정된다.

253 ^[44-2]	② 원고적격을 “부정”한 판례
<p>① 건물준공처분에 대해 인접건물 소유자들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</p> <p>②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.</p> <p>③ 일반국민 또는 인근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은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.</p> <p>④ 약사에게 한약제조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약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.</p> <p>⑤ 신규 공중목욕장 허가영입으로 기존 목욕장업자의 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.</p> <p>⑥ 석탄가공업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의 감소는 반사적 이익이다.</p> <p>⑦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.</p> <p>⑧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.</p> <p>⑨ 서울시립대학교총장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 임명함으로써 동 대학 세무학과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</p>	

<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>

-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.
- 문화재의 지정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나 국민일반 또는 학술연구자가 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
-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인의 주주가 갖는 이익

254	② 협의를 소의 이익[O]=권리보호의 필요를 인정
<p>① 법령(건축사법, 의료법)에서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</p> <p>②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</p> <p>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</p> <p>④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</p> <p>⑤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</p> <p>⑥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들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</p> <p>⑦ 부과 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를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</p>	

255	② 협의를 소의 이익[X]=권리보호의 필요를 부정
<p>①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→ 원칙> 각하</p> <p>②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중 이미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</p> <p>③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가 완료 후 이격거리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</p> <p>④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</p> <p>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같은 시험에 합격한 경우</p> <p>⑥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 계속 중에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</p> <p>⑦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자진입대한 경우</p> <p>⑧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한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</p> <p>⑨ 하자있는 기본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</p> <p>⑩ 공무원을 직위해제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공무원을 파면처분 하였을 때 먼저 있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</p> <p>⑪ 명예대신용 등 사회적·인격적 이익은 원칙상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. (판례의 소극설)</p>	

256 (098,099) ③ **항고소송의 “피고”가 되는 “위원회”**

□ **소국형 방공토 감금중인, 광주 교행**

합의제 행정청 → 항고소송의 피고[O]		의결기관 → 항고소송의 피고[X]
① 소청심사위원회(행정안전부소속)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형(행)정심판위원회 ④ 방송통신위원회(대통령소속) ⑤ 공정거래위원회 ⑥ (중앙)토지수용위원회 ⑦ 감사원 ⑧ 금융위원회	위원회 자체가 피고	① 광업조정위원회 ② 주(징)계위원회 ③ 교육위원회 ④ 지방의회 예외> 징계의결/의장선거 → 피고> 지방의회 cf> 조례(두일분교폐지조례) → 피고> 자치단체의 장(공포권자)
⑨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노동위원회	위원회 위원장 위원장	
⑩ 시·도 인사위원회(7급 시험)	위원장	

- ※ 소청심사위원회(행정안전부소속) : 다수설> 합의제 행정청, 기출문제> 의결기관
 → 국무총리소속[X], 중앙인사위원회소속[X]
- ※ 대통령이 소속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했을 때 → 피고> 소속장관
 → 행정안전부장관[X], 법무부장관[X]
- 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→ 피고>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
 국회의장 → 피고> 국회사무총장
 헌법재판소소장 → 피고> 헌법재판소 사무처장
 대법원장 → 피고> 법원행정처장

257 ③ **피고적격의 쟁점**

- ① 지방의회
 - ㉠ 조례 - 피고> (공포권자) 지방자치단체의 장
 □ 행정입법(행정행위[X]) - 원칙> 처분성[X], 예외> 처분성[O] - 처분법규 □
 → 두일분교폐지조례, 행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
 → 집행을 요하지 않는 법규명령 역시 처분으로 볼 수 있다.[O] ← 처분법규
 - ㉡ 원칙> 항고소송의 피고[X] ← 행정청이 아니고 의결기관(→ 위원회)이므로
 예외> 항고소송의 피고[O] → 징계의결 / 의장선거 : 피고> 지방의회
- ② 위임 / 대리
 - ㉠ 위임 - 피고> 수임청 ← 위임시 법적근거 반드시 필요[O], 전부 위임[X]
 - ㉡ 대리 - 피고> 피대리청(현명주의) → 자기 이름으로(위법) - 피고> 대리청
 - ㉢ 내부위임 - 피고> 위임청(현명주의) → 자기 이름으로(위법) - 피고> 수임청
- ③ 승계 / 폐지
 - ㉠ 승계 - 법조문 : 피고>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
 - 해석상 : 피고> 권한을 승계 받은 행정청
 - ㉡ 폐지 - 피고> 권한이 귀속하는(사무를 승계한) 국가 또는 공공단체(행정주체)
 → 항고소송(취소소송)에서 피고는 언제나 행정청이다.[X] □

258

④ 행정소송의 제소기간

※ 행정심판[×] → 행정소송[○]

- ① 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- 불변기간[○]
 - 판례 > ㉠ 처분 등을 현실적으로 안 날 ← 추상적[×]
 - 처분의 구체적 내용·위법여부 등은 알 필요[×]
 - ㉡ 처분 등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
 - 생활권 범위에 떨어진 경우 ✓ 법률상 추정[×], 본증[×]
 - “현실적으로 알았다.”라고 추정(사실상 추정 → “본증”으로 깨질 수 있다.)
 - 판례 > 아르바이트 직원(추정[○]), 아파트 경비원(추정[×])
- ②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- 불변기간[×] ← cf> 행정심판(180일)
 -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- ex>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
 - 판례 >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→ 도달주의 →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

※ 행정심판[○] → 행정소송[○]

- 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
 - 판례 >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재결을 알았거나 재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.
- ② 송달[×],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단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□ 제소기간의 적용범위

- ① 취소소송 : 적용[○]
- ② 무효등확인소송 : 준용규정[×]
-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: 준용규정[○] - ㉠ 행정심판[×] → 행정소송[○]
 - 판례 >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소송을 제기[○]
 - ㉡ 행정심판[○] → 행정소송[○]
 -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: 90일
 - 송달[×],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: 1년
- ④ 당사자소송 : 준용규정[×] 단, 개별법률에서 제소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면 불변기간으로 해석한다.

259 (100)

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

→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음(행정소송법의 규정[×])

- ① 조세소송(국세[국세기본법]+관세[관세법]) → cf> 지방세[×]
- 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→ 소청심사위원회(국가공무원법/ 지방공무원법)
 - 교원(교육공무원)에 대한 징계처분 → (교원징계) 재심위원회(교육공무원법)
- ③ 도로교통법 →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
- ④ 노동위원회법 →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 (피고>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)
- ⑥ 사용료/ 수수료/ 분담금 등에 대한 불복 → 이의신청(지방자치법)
- ⑦ 청(징)발법 → 징발보상심의회에 이의신청

□ 조공도 노사칭

260 (101,102)

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

행정심판제기[×] → 직접 행정소송제기[○]	행정심판제기[○] → 재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행정소송제기[○]
① 행정청이 사실상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(절) 잘 못 알린 때	①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

□ 처동단절, 6중행정

·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닦을 수 있다.[○]

· 판례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앞서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.[×]

262
(103)

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“심리원칙”

□ 공짜당구

소송요건

- 7가지
-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
- 각하
- 사실심 변론 종결시
- 직권조사사할

- 기각판결 (원고가 지는 것)
- 인용판결

행정심판	취소소송(행정소송)
<p>비공개주의</p> <p>대심주의</p> <p>당사자주의 (원칙)</p> <p>+ 직권주의 (예외)</p> <p>구술 또는 서면심리주의</p>	<p>공개심리주의</p> <p>짜(쌍)방심리주의</p> <p>당사자주의 (원칙)</p> <p>+ 직권주의 (예외)</p> <p>구술심리주의</p>

□ 행정심판

- 구술 또는 서면심리주의
- 명문의 규정 [O]
- 비공개주의
- 명문의 규정 [X]
- 학자들의 해석

263

취소소송제기의 효과

- ① **주관적** 효과
- ㉠ 법원 : 심리의무
 - ㉡ 당사자 : 동일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제소할 수 없다.

- ② **객관적** 효과 - **집행부정지**원칙
- ㉠ **공정력설(소수설)**
 - ㉡ **입법정책설(다수설)** - 우리나라, 프랑스, 일본 : 집행부정지
 - 독일 : 집행정지

	장점	단점
집행부정지	공익실현, 남소의 방지	권익구제에 미흡 → 가구제
집행정지	권익구제에 충실	남소의 우려

※ **가구제** (잠정적 권리구제수단)

- **소극적 가구제** - 행정소송법상 **집행정지**
- **적극적 가구제** - 민사소송법상 **가처분**
 - ① 가구제의 일종
 - ②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
 - ③ 행정소송에 적용 [X]

264	집행정지 (소극적 가구제)
<p>① 의의 :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는 것 [↖ 복효적 행정행위 : 인근주민] <input type="checkbox"/>복효적 행정행위 : 처분의 직접 상대방[취소판결의 제3자] - 집행정지를 신청[×] <input type="checkbox"/>법원의 직권 : 사정판결도</p> <p>② 집행정지의 대상 : 절차속행의 정지 → 처분의 집행을 정지 → 처분의 효력을 정지</p> <p>③ 요건 : 적극적요건 - 본처 회기 소극적요건 -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- 원고의 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→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</p> <p>④ 효력(내용) : 형성력(소급효[×], 장래효[O])미속력이 발생함</p> <p>⑤ 불복(구제) : 처분의 직접 상대방[연탄공정건축주] - 즉시항고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원고의 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[×], 패소 가능성이 명백할 것[×] <input type="checkbox"/>원고의 소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것[×], 승소 가능성이 명백할 것[×] <input type="checkbox"/>본안인용의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.[O]</p> <p>※ 행정심판·행정소송 : 원칙> 집행부정지, 예외> 집행정지</p>	

265 (104)	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상대방이 주장·소명해야 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처회기
<p>①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될 것 →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후 소의 취하가 있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연히 사라진다.</p> <p>② 처분 등이 존재 할 것 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→ 처분[×] → 집행정지[×] ← 부집사 ㉡ 통설·판례> 거부처분 등 소극적 처분 → 소의 실익[×] → 집행정지[×] ㉢ 부관 ┌ 부담 - 처분성[O] → 집행정지[O] └ 기타부관 - 처분성[×] → 집행정지[×] ㉣ 사실행위 ┌ 권력적 사실행위 → 집행정지[O] └ 비권력적 사실행위 → 집행정지[×]</p> <p>③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㉠ 판례> 금전보상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㉡ 금전부과처분(세금부과처분) ┌ 원칙>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[×] └ 예외>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[O] - 과징금납부명령</p> <p>④ 기(긴)급한 필요가 있을 것</p>		

266

사정판결

① 의의 :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[인용판결을 해야 함] 공공필요가 있으면 원고의 청구를 **기각**하는 판결

② 요건 : ㉠ 처분이 **위법**할 것, ㉡ 공공필요가 있을 것

③ 심리 : ㉠ **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**
 ㉡ **주장·입증책임** [(통설·판례) 법률요건분류설] → **피고 행정청**
 법원이 직권으로 [O]
 ㉢ **사정조사** -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손해의 정도·배상의 방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④ 판결 : ㉠ 주문에 “**위법**” 명시, ㉡ 소송비용 - **피고 행정청**

⑤ 적용범위 (준용규정이 적용되지 “**않는**” 소송) : **무사, 부집사, 당집사**

공익조항 : 집행부정지원칙, 사정판결

267

행정소송에서 위법성판단의 “기준시점”

① 취소소송 : 처분시

② 거부처분취소소송 : 처분시

③ 무효등확인소송 : 처분시

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: 판결시

⑤ **사정판결**

㉠ 위법성 판단시 : **처분시**

㉡ 사정판결이 필요한가의 판단시 : **판결시**

268
(105,106,107)

행정소송에서 “집행정지”와 “사정판결”의 적용범위

		집행정지	사정판결
항고소송	취소소송	[O]	[O]
	무효등확인소송	[O]	[X]
	부작위위법확인소송	[X]	[X]
	당사자소송	[X]	[X]

준용규정이 적용되지 “**않는**” 소송

① **무사**

② **부집사**

③ **당집사**

무사,
부집사,
당집사

272 (108,109) 기속력 vs 기판력

□ **속초**,
판사

	기속력	기판력
인적범위	당해행정청 + 관계행정청	당사자 + 후소법원
근거	행정소송법 §30	§8 ② → 민사소송을 준용
성질	실체법적 효력(권리/의무)	절차법(쟁송법, 소송법)적 효력
적용판결	인용판결에서만(형성력도)	인용판결 + 기각판결
시간적 효력	초(처)분시	사실심 변론 종결시(고등법원)

□시간적 효력

- ① **속초**[처]
- ② **판사**

273 입증책임

□ **법률요건분류설**

- ① **적극적 처분** : 과세처분, 운전면허취소처분
 - ㉠ **권한행사규정** : **피고 행정청** ex> 과세처분
 - ㉡ **권한불행사규정** : **원고** ex> 비과세대상
- ② **소극적 처분** :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
 - ㉠ **권한행사규정** : **원고** ex> 정보공개
 - ㉡ **권한불행사규정** : **피고 행정청** ex> 비공개대상

274	<p>무효등확인소송의 “소송요건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</p>
	<p>② 원고적격 — 취소소송 : 법률상 이익 무효등확인소송 :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판례·다수설 > 부정설 (법적보호이익설) 판례 > 무효인 행정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 ↔ 긍정설(즉시확정이익설) 그에 의해 형성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소송방법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. ex> 무효인 조세부과처분 → 민사소송 >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[O] 향고소송 > 무효등확인소송 [O]</p> <p>④ 제소기간 : 준용규정 [X] ← 제소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</p> <p>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: 준용규정 [X] 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됨</p>

275 (110)	<p>무효등확인소송의 “본안심사”와 “판결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</p>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본안심사></p> <p>① 전환 : 무효사유에서만 인정됨 → cf> 치유 : 취소사유에서만 인정됨</p> <p>② 입증책임 : 판례 > 원고책임설, 다수설 > 법률요건분류설 cf> 취소소송 : 법률요건분류설</p> <p>③ 하자의 승계 :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라면 이 하자는 후행행위에 바로 승계됨</p> <p>④ 선결문제 : 준용규정 [X], 무효사유에는 공정력 [X] → 선결문제 [X] 취소사유에는 공정력 [O] → 선결문제 [O]</p> <p>⑤ 재량처분의 취소 (행정소송법 §27) : 준용규정 [X] <input type="checkbox"/> “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/남용이 있으면 취소 할 수 있다.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판결 > 사정판결(무사) 간접강제제도 : 준용규정 [X]</p>

전입승선제, 무사

276	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 “ 소송요건 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
<p>① 대상적격 : 행정청의 부작위(↓ 부작위의 요건) cf> 취소소송 : 처분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신청인에게 법규상·조리상 신청권[O](판례) ㉡ 처분에 대한 신청 ㉢ 행정청은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[O] ㉣ 상당한 기간 동안 ㉤ 부작위(처분의 부존재) <p>② 원고적격 : 법규상/ 조리상 신청권 cf> 취소소송 : 법률상 이익</p> <p>④ 제소기간 : 준용규정[O] → 통설·판례>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소송제기가 가능함</p> <p>□ 행정심판(의무이행심판)[O] → 부작위위법확인소송[O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㉡ “㉠[×]”,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(단,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) 	

- ※ **처분이 아닌 신청**
- ① 사경제작용에 대한 신청
 - ex> 잡종재산의 매각신청
 -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신청
 - ex> 행정지도의 신청
 - ③ **행정입법에 대한 신청**
- 판례> **법규상·조리상 신청권이 없다.**
→ 부작위가 아니고 원고적격이 없다.
□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의 문제를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닌 원고적격의 문제로 본다.[×]

277 (111)	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 “ 본안심사 ”와 “ 판결 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
<p>□ 본안심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직(집)행정지 : 준용규정[×] ② 선결문제(행정소송법 §11) : 준용규정[×] ③ 심리의 범위 : 다수설, 판례> 절차적 심리설(“부작위는 위법하다.”라는 확인만 가능) □ 부작위 → 인용판결(기속력이 발생 → 재처분의무[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]) □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[O] or 거부처분[O] ④ 판단의 기준시 : 판결시 cf> 취소소송 : 처분시 ⑤ 소의 변경 → 피고의 변경을 수반함 cf> 소의 변경 : 법원의 판결[×], 법원의 결정[O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소의 종류의 변경(행정소송법 §21) : 준용규정[O] 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(행정소송법 §22) : 준용규정[×] <p>□ 판결> 사정판결(부집사) : 준용규정[×]</p>	

□ **부집사**,
직선심판변경

- ※ **결정**
- ① **과태료부과결정**
 - ② **집행정지결정**
 - ③ **간접강제제도**
 - ④ **소의 변경**
- 불복방법> 항고, 재항고

278	소의 변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→ 법률상 이익이 계속되어야 함 ②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(고등법원까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cf> 청구의 변경(행정심판법) :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(← 재결청의 재결[×]) ③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→ 법원의 판결[×] ④ 청구의 취지 등을 변경하는 것 <p>□ 행정소송법 §21 소의 종류의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규정[O] □ 항고소송 ↔ 항고소송, 항고소송[행정청] ↔ 당사자소송[행정주체] □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은 피고의 변경을 수반한다.[O] <p>□ 행정소송법 §2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원고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규정[×] 	

279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사자소송의 “소송요건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□⑥ 소장만 같다.</p>
<p>① 대상적격 : 처분성[×], 법률관계(권리/ 의무)[O]</p> <p>㉠ 실질적 당사자소송</p> <p>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</p> <p>㉢ 손해배상청구소송</p> <p>㉣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=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</p> <p>→ 학설> 당사자소송, 판례> 민사소송</p> <p>→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“아닌” 것은? ㉡, ㉣</p> <p>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</p> <p>㉥ 형식적 당사자소송 : 실질적(항고소송) + 형식적(대등한 당사자를 피고)</p> <p>□ 개별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특허법, 실용신안법</p> <p>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, 디자인 보호법, 의장법, 전기통신법</p> <p>□ ex> 보상금증감소송 : 피고> 사업시행자 [O], 재결청 [×]</p> <p>② 원고적격 : 준용규정 [×] → (행정소송법 §8 ②) 권리보호의 이익</p> <p>③ 피고적격 : 행정주체 → 국가(법무부장관), 공공단체, 그 밖의 권리주체(공무수탁사인)</p> <p>④ 제소기간 : 준용규정 [×] ←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</p> <p>□ 개별법률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→ 불변기간으로 해석</p> <p>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: 준용규정 [×] 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됨</p> <p>⑦ 관할법원 : 준용규정 [O] +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관계행정청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</p>	

280 (112,113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사자소송의 “본안심사” “판결”에서 취소소송과 다른점</p>
<p>□본안심사></p> <p>① 직(집)행정지 : 준용규정 [×]</p> <p>② 선결문제(행정소송법 §11) : 준용규정 [×]</p> <p>③ 재량처분의 취소(행정소송법 §27) : 준용규정 [×]</p> <p>□판결></p> <p>① 사정판결 : 준용규정 [×]</p> <p>② 제3자효(행정소송법 §29) : 준용규정 [×]</p> <p>□제3자의 재심청구 : 준용규정 [×], cf> 제3자의 소송참가 : 준용규정 [O]</p> <p>③ 재처분의무 : 준용규정 [×], cf> 판결의 기속력 : 준용규정 [O]</p> <p>□간접강제제도(행정소송법 §34) : 준용규정 [×]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※ 판례상 손실보상청구권</p> <p>□원칙> 사권 → 민사소송</p> <p>□예외> 공권 → 당사자소송</p> <p>□ex>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</p> <p>→ 판례는 하천법 관련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민사소송으로 본다.[×]</p> </div> <div style="width: 45%;"> <p>※ 손실보상청구권</p> <p>· 판례> 사권 → 민사소송</p> <p>· 통설> 공권 → 행정소송(당사자소송)</p> </div> </div>	

□ **당집사,**
직선재,
사3재

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

□ 가무전공

(1)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

- ① 노래(가) :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재위촉거부
-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
- ③ 지방전문직공무원(서울대공전술연구소연구원) 채용계약의 의사표시
- ④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

(2)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

- ①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소송(석탄산업지원금 청구소송)
- ②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
(폐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 청구)
- ③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상 보상금 지급청구소송
□항고소송 :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상 **보상금** 지급청구소송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**심의위원회**의 심의, 결정은 **행정처분**
- ④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부조금 청구소송
- ⑤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소송
- ⑥ 상이연금 등의 급여 지급청구소송
- ⑦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
□환매권 : 판례> 사권
통설> 공권
- ⑧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
- 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~~~
직접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퇴역연금액과 결정, 통지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를 수 있다.
- ⑩ ~~~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~~~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~~~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.

(3) 공법상 신분·지위 등의 확인소송

- ① 공무원(국·공립학교 학생, 국가유공자)의 지위확인소송
- ② 농지개량조합직원의 지위확인소송
- ③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확인소송
□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**분양거부처분**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**항고소송**에 의한다.
- ④ 연금수혜대상자 확인소송
- ⑤ 훈장종류 확인소송
- ⑥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
- ⑦ 영관생계보조기금관리자 확인소송
- ⑧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의소
- ⑨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**총사업비산정**에 관한 소송
- ⑩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한 **손실보상금**의 지급을 구하거나 **손실보상청구권**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
□손실보상청구권 : 판례-원칙> 사권
-예외> 공권(하천법~~~)

(4)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□다수설> 당사자소송

소송실무> 민사소송

by 정재욱

오타 발견시 메일 보내 주세요!

wook-77@nate.com

김종석 행정법총론 두문자와 쟁점!